



# 학생인권조례 강사단 양성 워크숍

- 때: 2010년 9월 11일(토) 10-5시
- 곳: 전교조 서울지부

## < 워크숍 차례 >

1.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 학생인권기준 이해하기 - 한낱(인권교육센터 '들')
3.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넘기
  - 1) 조례안을 둘러싼 외부쟁점에 대한 대안논리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2)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의 내부 쟁점 검토 - 변춘희(어린이책시민연대)



[첫째 마당]

# 학생인권조례, 왜 필요한가

- 학생인권 실태

공현 ||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ppt 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2009.11.01.

##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및 방법

: 2009년 8월 31일 ~ 10월 1일 (약 1개월)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설문 참여. 학생과 교사들의 협조를 통해 학교 안에서 무작위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함. (※ 경남지역에서도 같은 설문지로 조사했으나 자체적으로 입력, 처리하여 결과를 냈기에 참고를 위해 따로 실음.)

◎ 분석 도구 : EXCEL2007과 SPSS12.0K, 계산기.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으로 분석.

◎ 전국 조사한 중학생 수 : 656명

전국 조사한 고등학생 수 : 1366명

◎ 성별 및 지역분포

○ 전국 중학생

남자	여자	기타(TG 등)	무응답
30.8% (202)	67.5% (443)	0.2% (1)	1.6% (10)

수도권	영남	호남	
54.1%(355)	13.5%(88)	14.0%(131)	
충청	강원	제주	무응답
9.8%(64)	1.4%(9)	0.0%(0)	1.4%(9)

○ 전국 고등학생

남자	여자	기타	무응답
34.6%(472)	65.2%(890)	0.1%(2)	0.1%(2)

수도권	영남	호남	
47.4%(648)	20.1%(274)	26.1%(357)	
충청	강원	제주	무응답
4.2%(58)	1.4%(19)	0.1%(2)	0.6%(8)

# 1. 전반적인 학생인권 상황의 악화

현재 전반적인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거나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중학생 6.7%, 고등학생 4.6%에 불과하다. 침해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과 매우 침해받고 있다고 답한 사람을 합하면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에 이른다.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학생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질문들에서 나온 결과를 고려할 때 “보통”으로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인권 침해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 그리고 다른 학교 상황과 비교하여 자신이 현재 다니는 학교가 보통의 수준이라는 의미로 답한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일 것 등으로 추정된다.

2008년 이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중고등학생 모두 극소수이다. 변화가 없다는 답과 악화되었다는 답이 높다.(모른다는 답이 높은 것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이전의 학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없다는 답을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학교 상황이 학생인권 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학생인권이 일정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전부터도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매우 잘 보장	잘 보장	보통
1.8% (12)	4.9% (32)	<b>42.4% (278)</b>
침해	매우 침해	무응답
<b>23.8% (156)</b>	<b>22.4% (147)</b>	4.8% (31)

현재의 학생인권 보장 상황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매우 잘 보장	잘 보장	보통
1.1%(15)	3.5%(48)	<b>33.4%(456)</b>
침해	매우 침해	무응답
<b>32.4%(443)</b>	<b>27.3%(373)</b>	2.3%(31)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3%(28)	<b>28.0%(184)</b>	<b>28.7%(188)</b>	<b>33.5%(220)</b>	5.6% (36)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보장하는방향	침해하는방향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0%(54)	<b>32.5%(444)</b>	<b>37.3%(510)</b>	<b>23.9%(327)</b>	2.2%(30)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부정적이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38.4%, 고등학교의 경우 51.9%나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중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6%(4)	9.3%(61)	20.9%(137)	24.4%(160)	38.4%(252)	6.4%(42)

정부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최선을다함	노력하고있음	보통	노력부족	전혀노력안함	무응답
0.2%(3)	3.7%(50)	13.6%(186)	28.0%(382)	51.9%(709)	2.6%(35)

## 2. 입시, 과잉 학습 (자율학습, 보충수업, 사교육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간, 학생간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 성적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이 중학생 50%, 고등학생 61%로 모두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입시,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중학생 44.2%, 고등학생 51.9%, 증가가 중,고등학생 모두 30% 가량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한 학생은 중학생 0.8%, 고등학생 0.9%에 불과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입시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많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입시 및 성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많이 받음	조금 받음	보통	잘 안 받음	전혀 안 받음	무응답
50.0% (328)	30.8% (202)	11.0% (72)	4.1% (27)	1.5% (10)	2.6%(17)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많이 받음	조금 받음	보통	잘 안 받음	전혀 안 받음	무응답
61.1%(834)	25.6%(350)	8.3%(114)	2.5%(34)	1.5%(20)	1.0%(14)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많이 감소	무응답
44.2% (290)	28.7% (188)	23.3% (153)	0.8% (5)	0.8% (5)	2.3%(15)

2008년 이후 입시나 성적, 진로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 없음	감소	많이 감소	무응답
51.9%(709)	29.9%(408)	15.8%(216)	0.9%(12)	0.6%(8)	1.0%(13)

중학생들도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거나 0교시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기된 바 있다.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보충수업(0교시), 보충수업 등의 현실은 어떨까? 이번 조사에서도 2008년 이후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한 중학생이 36.7%에 달했다. 원래부터 야자나 각종 보충수업들이 많았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32.7%가 자율학습·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된다고 답했다.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짐
36.7% (241)	13.4% (88)	2.6% (17)	22.7% (149)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짐	별다른 변화가 없음	잘 모름	무응답
3.0% (20)	25.2% (165)	22.3% (146)	2.8% (18)

2008년 이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하교시간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새로 생겼거나, 더 강제적으로 운영	직접 강제되지는 않지만 성적 압박이나 가정에서의 압박이 더 심해짐	야간자율학습, 아침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이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운영	등교가 더 빨라지거나 하교가 더 늦어짐
32.7%(446)	9.8%(134)	2.6%(36)	20.1%(274)
등교가 더 늦어지거나 하교가 더 빨라짐	별다른 변화가 없음	잘 모름	무응답
2.3%(32)	35.9%(491)	17.0%(232)	0.9%(12)

야간자율학습이나 방학 중 자율학습·보충수업도 강제한다는 응답도 많아서, 입시와 강제·과잉학습이 학생들의 저녁 시간과 방학을 빼앗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방과후학교조차도 강제된다는 답이 중학교 35.2%에 이르러서 방과후학교가 강제적인 보충수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느끼게 했다. 아침보충수업(소위 0교시 수업)도 중학생의 10.2%, 고등학생의 15.4%가 강제라고 답했는데, 0교시를 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자율학습을 시킨다는 응답이 높았다.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15.4% (101)	53.5% (351)	19.0% (125)	21.2% (139)
방과후학교	점심시간 자율학습, 보충수업	방학 보충수업, 자율학습	무응답
85.1% (558)	8.4% (55)	41.9% (275)	4.9% (32)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	오후저녁보충수업
85.9%(1173)	57.5%(785)	20.9%(285)	72.1%(98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56.9%(777)	13.5%(184)	80.6%(1101)	0.6%(8)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4.4% (29)	24.4% (160)	10.2% (67)	10.8% (71)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35.2% (231)	2.9% (19)	14.9% (98)	19.2% (126)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강제로 참여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반강제하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60.0%(819)	35.6%(486)	15.4%(210)	54.7%(747)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28.5%(389)	7.3%(100)	53.1%(726)	6.5%(89)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0.5% (3)	1.1% (7)	0.2% (1)	0.8% (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5.8% (38)	0.3% (2)	2.1% (14)	19.2% (126)

부모나 보호자가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5.0%(68)	1.5%(20)	1.0%(14)	2.5%(3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2.0%(27)	0.2%(3)	3.3%(45)	7.0%(96)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 (중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7.2% (47)	6.6% (43)	2.1% (14)	3.9% (25)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32.6% (214)	2.4% (16)	11.1% (73)	19.2% (126)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 (고등학생)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0교시)	오후저녁보충수업
15.4%(211)	3.0%(41)	1.5%(21)	4.9%(67)
방과후학교	점심시간자율보충	방학자율보충	무응답
15.7%(214)	2.4%(33)	10.8%(148)	6.7%(92)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듯 중학교의 평균 등교시간은 오전 8시 8분, 고등학생의 경우 오전 7시 45분으로, 중학생 중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한다고 답한 비율이 38.1%에 고등학생 86.9%로, 학생들은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등교를 해야만 한다. 하교시간마저 오후 4시 이후라고 답한 중학생이 60.8%, 고등학생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 하교한다는 응답이 64.7%이다. 하루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등학생은 평균 12시간 35분, 중학생은 평균 8시간 4분에 육박한다. 성인들도 하루 8시간 노동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마당에(거의 지켜지지 않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하며 여가가 충분치 못함을 알 수 있다.

평균 수면시간은 이런 과잉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학생은 6.7시간, 고등학생의 경우 고작 5.6시간이며, 중학생 중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이 40.7%에 고등학생의 경우 75.3%였다. 건강을 위해서는 대개 하루 7-8시간 정도는 자야 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 모두 잠이 부족하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야학원 운영을 규제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밤 11시, 12시, 1시에 학원이 끝난다는 답도 상당수 되었다. 청소년들이 잘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지만, 정부와 국회가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입시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현실부터 고려하길 바란다.

등하교시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평균 수면시간, 학원이 끝나는 시간 등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8시08분	평균 등교시간	약 오전7시45분
오전 8시 이전 등교	38.1%(250)	오전 8시 이전 등교	86.9%(1181)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4시15분	평균 하교시간	약 오후8시21분
오후 4시 이후 하교	60.8%(399)	오후 9시 이후 하교	64.7%(884)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8시간4분	학교에 있는 평균 시간	약 12시간35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9시31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학원 끝나는 시간	약 오후11시20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14.2시간	사교육 받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 받는 시간(1주일)	8.3시간
평균수면시간	6.7시간	평균수면시간	5.6시간
6시간 이하 수면	40.7%(267)	6시간 이하 수면	75.3%(1028)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응답 중에는 국영수사과 등 주요 입시 과목에 대한 사교육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 사교육의 경우도 일부는 입시를 위한 것이었다. 2008년 이후에 사교육이 증가했다고 답한 중학생은 30.3%, 고등학생은 20.7%였다. 권영길 의원실에서 냈던 자료를 보더라도 입시 사교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고 있으나 사교육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방과후학교 등도 강제적 보충수업처럼 되어가고 있다.

사교육 받는 과목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국영수사과	예체능	입시(논구술 등)	기타	무응답 (사교육 받지 않는 학생 포함)
67.2% (441)	5.5% (36)	2.0% (13)	2.4% (16)	34.5% (227)

사교육 받는 과목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국영수사과	예체능	입시(논구술 등)	기타	무응답 (사교육 받지 않는 학생 포함)
42.2%(576)	4.8%(65)	3.7%(50)	1.7%(23)	49.5%(676)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0.3% (199)	5.3% (35)	36.8% (241)	21.8% (143)	5.8% (38)

2008년 이후 사교육을 받는 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사교육증가	사교육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0.7%(283)	10.7%(146)	41.2%(563)	20.6%(282)	6.7%(91)

### 3.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성적, 외모 등

차별 중에서는 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원인으로 성적을 꼽은 중학생이 59.3%, 고등학생이 69.6%에 달했다. 이는 20%대인 성별, 나이 및 학년, 외모나 신체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비율이다. 그 다음으로는 외모로 인한 차별, 나이나 학년으로 인한 차별이 많았다.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은 당사자들이 수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수치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역시 주목해야 할 차별임은 물론이다. 또한, 성적이 주된 차별 원인이라 그런지 차별의 방법 또한 학생들에 의한 것보다 교사에 의한 것이 많았다. 학생들에 의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시설 이용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존재했다.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59.3%(389)	20.1%(132)	23.3%(153)	6.1%(40)	15.4%(101)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2.3%(15)	12.6%(83)	28.4%(186)	22.4%(147)	3.7%(24)	6.3%(41)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69.6%(951)	14.9%(204)	27.6%(377)	3.5%(48)	7.3%(100)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차별없음	기타	무응답
1.0%(13)	15.7%(214)	25.9%(354)	17.0%(232)	1.7%(23)	3.1%(42)

차별의 방법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교사언어폭력	교사체벌	학생괴롭힘	시설이용
41.2%(270)	35.8%(235)	23.3%(153)	7.3%(48)
임원출마	정보공개	기타	무응답
13.0%(85)	6.1%(40)	5.3%(35)	28.5%(187)

차별의 방법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교사언어폭력	체벌	학생괴롭힘	시설이용
46.5%(635)	31.7%(433)	15.4%(210)	16.5%(226)
임원출마	정보공개	기타	무응답
14.6%(200)	8.4%(115)	6.8%(93)	22.2%(303)

2008년 이후 차별 상황 변화에 있어서는 중고생 모두 변화없다는 답과 모른다는 답이 가장 높지만 증가했다는 답이 감소했다는 답에 비해 높다. 구체적으로 차별이 어떤 분야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가장

높지만,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답이 9~11%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집단의 경우 입시 성적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했다는 답이 전체보다 더 높다.

2008년 이후 차별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차별증가	차별감소	일부 영역은 증가, 일부 영역은 감소	잘 모르나 변화없는것 같다
20.6%(135)	1.4%(9)	0.2%(1)	1.2%(8)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3.5%(220)	36.7%(241)		6.5%(42)

2008년 이후 차별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차별증가	차별감소	일부 영역은 증가, 일부 영역은 감소	잘 모르나 변화없는것 같다
19.4%(265)	1.5%(21)	0.2%(3)	0.7%(10)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9.0%(536)	34.1%(466)		4.6%(63)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9.3%(61)	1.2%(8)	0.6%(4)	0.0%(0)	0.5%(3)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증가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0%(0)	1.4%(9)	1.5%(10)	4.0%(26)	73.9%(485)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증가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11.1%(152)	1.0%(13)	1.1%(15)	0.1%(2)	0.1%(1)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증가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0%(0)	0.8%(11)	0.9%(12)	3.4%(47)	81.3%(1110)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응답 (중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0.3%(2)	0.3%(2)	0.2%(1)	0.0%(0)	0.0%(0)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감소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0%(0)	0.0%(0)	0.0%(0)	0.0%(0)	82.6%(543)

차별이 어떤 영역에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성적	성별	나이학년	성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0.0%(0)	0.1%(1)	0.1%(2)	0.1%(1)	0.1%(2)
인종	경제력	외모신체	기타	무응답(감소안했다는 답까지 포함)
0.1%(1)	0.1%(1)	0.0%(0)	0.2%(3)	90.1%(1231)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사람(61명) 중 입시성적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답 분석 (중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 감소
70.3%	21.9%	6.3%	1.6%	0.0%

성적 차별이 증가했다는 사람(152명) 중 입시성적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답 분석 (고등학생)

많이 증가	증가	변화없음	감소	많이 감소
75.7%	16.4%	6.6%	0.7%	0.7%

#### 4. 거의 보장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

이번 조사결과만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답이 중학생의 경우 7.8%, 고등학생의 경우 6.2%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중학생 32.6%, 고등학교 36.9%에 달했다.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도교사가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활동에 있어서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학생회 임원에 성적제한이나 선거에서 후보의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는 것,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것이 골고루 나왔다. 심지어 학생회 활동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답도 중학생 16.5%, 고등학생 11.4%나 되었다.

학생회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적 문화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동아리 상황도 열악했다. 종합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고 지원이 충분하다는 대답이 중학교에서는 15.1%, 고등학교에서는 18.4%에 불과하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동아리 활동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동아리가 학교의 선호에 따라 폐쇄되거나 불허된다는 답이 고등학교가 더 많은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동아리를 학교가 불허하거나 폐쇄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중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7.8% (51)	30.2% (198)	23.9% (157)	32.6% (214)	5.5% (36)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가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학생회나 다른 기구를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의견을 내지만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잘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무응답
6.2%(85)	24.9%(340)	28.3%(387)	36.9%(504)	3.7%(50)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중학생)

회의나 활동 등에 대해 지도 교사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다.	설문조사,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려면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나 선거시 후보의 의견,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23.0% (151)	24.8% (163)	15.5% (128)	20.7% (136)
<b>잘 모름</b>	<b>기타</b>	<b>무응답</b>	
16.5% (108)	4.3% (28)	15.5%(102)	

학생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회의나 활동 등에 대해 지도 교사가 단순한 조언을 넘어 개입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다.	설문조사, 서명운동,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려면 교사나 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 임원에 성적 제한이나 선거시 후보의 의견, 경력, 공약 등에 제한이 있다.	예산이나 시설 지원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26.4%(360)	29.0%(396)	22.8%(312)	25.4%(347)
<b>잘 모름</b>	<b>기타</b>	<b>무응답</b>	
11.4%(156)	6.1%(83)	12.8%(175)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응답 (중학교)

<b>활동 활발, 지원 충분</b>	<b>동아리 불허, 폐쇄</b>	<b>지원부족</b>	<b>활동 거의 없음</b>
15.1% (99)	14.6% (96)	32.0% (210)	39.2% (257)
<b>학생참여부족</b>	<b>잘 모름</b>	<b>기타</b>	<b>무응답</b>
18.0% (118)	3.2% (21)	4.7%(31)	5.3%(35)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b>활동 활발, 지원 충분</b>	<b>동아리 불허, 폐쇄</b>	<b>지원부족</b>	<b>활동 거의 없음</b>
18.4%(252)	25.2%(344)	44.0%(601)	30.1%(411)
<b>학생참여부족</b>	<b>잘 모름</b>	<b>기타</b>	<b>무응답</b>
21.2%(290)	2.6%(35)	4.0%(55)	2.8%(38)

2008년 이후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는, 변화없다 또는 모른다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고 위축되었다는 답이 중학생 14.0%, 고등학생 19.6%였다.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답한 중학생의 35.9%, 고등학생의 50.0%가 위축의 원인으로 입시환경변화를 꼽았다. 입시, 성적, 진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과 연관지어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입시환경 변화 외에도 학교 지원의 변화, 교장 교감 교사 등의 변화가 주된 이유로 지목된 것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2008년 이후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교)

학생회 동아리 활발해짐	학생회 동아리 위축됨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6.3%(41)	14.0%(92)	37.3%(245)	35.5%(233)	5.8% (38)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2008년 이후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학생회 동아리 활발해짐	학생회 동아리 위축됨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8%(65)	19.6%(268)	37.3%(509)	34.8%(475)	3.2%(44)

활발해졌다고 답한 사람들(41명) 중 이유로 꼽은 것 (중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26.8%	26.8%	17.1%	31.7%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26.8%		4.9%	7.3%

활발해졌다고 답한 사람들(65명)이 이유로 꼽은 것 (고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21.5%	15.4%	47.7%	30.8%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12.3%(33)		4.6%	3.1%

위축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유로 꼽은 것 (중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32.6%(30)	37.0%(34)	22.8%(21)	34.8% (32)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35.9%(33)		4.3%(4)	8.7% (8)

위축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이유로 꼽은 것 (고등학교)

학교운영규정	교장,교감 변화	학생 변화	학교지원변화
41.0%	44.8%	13.8%	41.4%
입시, 교육환경변화		기타	무응답
50.0%		3.4%	8.2%

## 5.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두발복장규제

학생들이 두발규제 등을 폐지하라는 운동을 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두발복장규제 상황은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 2000년, 2005년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하

여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알아서 결정하도록 한 조치는 두발규제 상황 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 두발규제에 있어서는 이미 진즉에 ‘학교자율화’가 되었던 셈인데, 그 이후로도 두발규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이 95.3%, 고등학생이 94.2%에 달한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들이 교복을 입히는데도 교복을 강제로 입힌다는 답이 중학생 77.0%, 고등학생 77.5%로 의외로 적은 것(?)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도 악세서리, 양말 등 다양한 복장규제가 존재했다.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5.3% (625)	2.9% (19)	0.8% (5)	0.3% (2)	0.8% (5)

두발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머리카락의 길이 또는 염색, 파마 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교사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	두발규제가 없고 완전히 자유롭다.	기타	무응답
94.2%(1287)	4.2%(58)	1.0%(13)	0.2%(3)	0.4%(5)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중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0% (505)	70.7% (464)	38.7% (254)	78.4% (514)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85.1% (558)	64.6% (424)	1.4% (9)	1.8% (12)	0.3% (2)

복장규제의 존재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한다.	교복 안팎에 옷(셔츠,외투 등) 입는 것을 규제한다.	양말,스타킹,신발 등 색깔,형태를 규제한다.	화장하는 것을 규제한다.	
77.5%(1058)	74.4%(1011)	33.7%(461)	67.9%(928)	
귀걸이,핀 등 악세서리를 규제한다.	명찰이나 뱃지 착용을 강제한다.	복장과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	기타	무응답
79.1%(1080)	65.6%(896)	1.5%(21)	2.8%(38)	0.5%(7)

두발복장규제 위반시 처벌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점이나 징계로 처벌한다는 답이 가장 많은 편이다. 교사가 강제로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강제이발이 23~29%나 응답이 나왔는데, 특히 강제이발을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자 폭력으로 보고 중단을 촉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두발복장규제 위반 시 처벌 방법에 대한 응답 (중학생)

강제이발	체벌	벌점이나 징계	훈계
28.7% (188)	56.3% (369)	69.1% (453)	54.0% (354)
악세서리 등 압수	재검사	기타	무응답
61.0% (400)	55.5%(364)	1.5% (10)	0.7% (5)

두발복장규제 위반 시 처벌 방법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강제이발	체벌	벌점이나 징계	훈계
23.5%(321)	49.3%(674)	74.7%(1020)	54.5%(744)
악세사리등 압수	재검사	기타	무응답
58.6%(801)	73.4%(1003)	1.7%(23)	05%(7)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도 강화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규정이 학생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거나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는 대답도 중고등학생 모두 각각 20%와 40%를 넘는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두발복장규제가 별 상관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두발복장규제다. 또한 학교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학교들이 학생들을 더 통제하고, ‘단정한 학생’들로 만들어 지역 사회나 보호자(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에 대한 평판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4.1% (27)	21.2% (139)	4.6% (30)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2.2% (277)	26.7% (175)	22.7% (149)	2.6% (17)

2008년 이후 두발복장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규정이 더 자유롭게 개정되었다.	규정이 학생들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단속과 처벌이 덜해졌다.	
2.6%(36)	25.5%(348)	4.3%(59)	
단속과 처벌이 더 엄격해졌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
41.1%(562)	34.0%(465)	17.6%(241)	1.0%(14)

## 6. 없어지지 않는 체벌, 숨막히는 상벌점제

체벌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이다. 교육부는 체벌을 줄이고 없애기 위해 체벌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거나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다수가 체벌을 경험하고 있었다. 중고생 모두 50% 가량이 1주일에 1회 이상 높은 빈도로 체벌을 경험한다고 했다.

체벌의 이유는 두발복장규제 위반, 과제 및 수업태도, 지각결석이 고르게 5-60%에 달했다. 성적으로 인한 체벌도 상당수 존재했고, 교사지도불응이나 교사, 학교에 대한 저항 또한 많은 응답이 나와서,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지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경우에 그 학생들과 대화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적 올리거나 두발복장규제 위반과 같은 입시경쟁과 억압적인 학교 규칙에서 비롯되는 체벌이 많다는 것은 체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유의미할 것이다.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52.1%(342)	15.5%(102)	8.7%(57)	14.9%(98)	5.8%(38)	2.9%(19)

체벌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49.9%(681)	14.0%(191)	9.5%(130)	19.9%(272)	5.1%(70)	1.5%(20)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6.4%(370)	44.1%(289)	62.3%(409)	18.9%(124)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28.7%(188)	25.0%(164)	7.2%(47)	12.5%(82)

체벌을 당한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과제수업태도	성적
55.4%(757)	52.3%(714)	54.8%(749)	13.3%(181)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저항	기타(학생간 폭력 등)	무응답
34.6%(472)	22.6%(309)	7.5%(102)	7.5%(102)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매우 드물게 경험	경험 없음	무응답
31.6%(207)	16.0%(105)	11.6%(76)	23.3%(153)	14.0%(92)	3.5%(23)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 1회 이상	1달 1회 이상	1달 1회 미만	매우 드물게 경험	경험없음	무응답
35.9%(490)	15.4%(211)	12.2%(166)	22.8%(312)	11.2%(153)	2.1%(29)



2008년 이후 체벌 및 언어폭력의 변화에서도, 변화없다 또는 모른다는 답 다음으로 체벌이 강화되었다는 답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교육부에서는 체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체벌이 줄어들거나 약해졌다는 답은 거의 없어서, 교육부의 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체벌이 더 심해진 이유는 두발복장 규제가 강화된 것이나 등하교시간 및 자율·보충학습이 강화된 것 등과 연관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체벌강화	체벌완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완화
24.2%(159)	5.2%(34)	13.4%(88)	3.8%(2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29.0%(190)	36.1%(237)		3.2%(21)

2008년 이후 체벌, 언어폭력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체벌강화	체벌완화	언어폭력강화	언어폭력완화
20.1%(275)	4.9%(67)	13.8%(188)	3.3%(45)
변화없다	모름		무응답
34.9%(477)	34.5%(471)		1.6%(22)

정부가 체벌의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린마일리지제, 상벌점제이다. 그러나 정말로 학생들 입장에서도 상벌점제가 대안일까? 상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에 대해 질문했더니 중학생의 45.4%, 고등학생의 49.4%가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징계가 증가했다고 답한 학생들 중 다수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상벌점제 도입을 지목했다. 상벌점제 도입이 규제투성이인 학교에서 징계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기까지 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징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교내폭력보다 두발복장규제 위반이 더 수치가 높은 것도 볼 수 있다. 중학생도 두발복장규제 위반이 주된 징계 사유 중 하나인데, 불필요한 두발복장규제를 없애기만 해도 체벌이나 징계가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중고등학교 모두 흡연 및 음주가 징계 사유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학교가 흡연하는 학생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금연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흡연하는 학생들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지도불응이나 교사, 학교에 대한 저항도 꽤 많은 응답이 나온 것도 주목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징계가 증가했다는 답이 많은데 그 원인으로는 상벌점제 도입, 교장, 교감, 교사의 변화, 학교 규정의 변화가 주로 지목되었다. 두발복장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답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중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5.4%(298)	4.7%(31)	21.8%(143)	21.3%(140)	3.5%(23)	3.2%(21)

상벌점제 느낌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통제받는다고 느낌	상벌점제가 있어서 더 좋음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없음	상벌점제없음	기타	무응답
49.4%(675)	5.6%(77)	20.5%(280)	18.7%(25)	2.9%(39)	2.9%(39)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교내폭력	음주흡연
45.4%(298)	27.6%(181)	65.2%(428)	64.6%(424)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 저항	기타	무응답
32.3%(212)	41.2%(270)	3.2%(21)	4.2%(27)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두발복장위반	지각결석	교내폭력	음주흡연
54.0%(737)	29.6%(404)	48.6%(664)	67.5%(922)
교사지도불응	교사/학교에 저항	기타	무응답
34.8%(476)	33.7%(461)	5.2%(71)	2.3%(31)

2008년 이후 징계 받는 것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교)

징계증가	징계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8.3%(251)	4.3%(28)	19.8%(130)	34.1%(224)	3.6%(23)

2008년 이후 징계 받는 것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징계증가	징계감소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2.8%(448)	3.7%(51)	25.8%(353)	35.1%(480)	2.5%(34)

징계가 증가했다는 사람(251명) 중 증가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45.4%	52.2%	45.4%	17.5%	10.3%	0%	3.1%

징계가 증가했다는 사람(448명) 중 증가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47.8%	52.2%	48.0%	14.3%	9.0%	1.1%	4.0%

징계가 감소했다는 사람(28명) 중 감소 이유에 대한 응답 (중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21.4%	32.1%	25.0%	21.4%	25.0%	0.0%	7.1%

징계가 감소했다는 사람(51명) 중 감소 이유에 대한 응답 (고등학교)

상벌점제	규정변화	교장교감 교사변화	학생변화	모름	기타	무응답
1.2%	21.6%	25.5%	15.7%	33.3%	3.9%	11.8%

## 7. 기타 소지품, 휴대전화 규제, 급식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학생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가 규정으로 금지(등교시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돌려주는 것도 포함)되었다는 답은 중학생 57.3%, 고등학생 47.0%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도 중학생의 70.9%, 고등학생의 53.1%가 휴대전화를 꼽았다.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규제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에 대한 응답 (중학생)

휴대전화 소지가 규정으로 금지	수업시간만 금지	교사에 따라 규제
57.3% (376)	24.1% (158)	5.9% (39)
규제 안함	기타	무응답
6.4% (42)	3.2% (21)	0.6% (4)

학교에서 휴대전화 규제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휴대전화금지	수업시간만금지	교사에 따라 규제
47.0%(642)	30.2%(412)	10.7%(146)
규제안함	기타	무응답
10.5%(143)	0.5%(7)	1.1%(16)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 (중학생)

휴대전화	담배나 술	음악기기 전자기기	책	화장품, 장신구, 옷
70.9% (465)	53.0% (348)	40.4% (265)	38.7% (254)	32.0% (210)

학교에서 압수되는 물품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술담배	휴대전화	책	옷장신구	전자기기
54.7%(747)	53.1%(725)	30.1%(411)	29.2%(399)	26.5%(362)

소지품 검사 빈도에 대한 응답 (중학생)

1주일에 1회이상	1달에 1회이상	1달에 1회미만	드물게 특별한 경우	소지품 검사 없음	기타	무응답
4.9% (32)	5.0% (33)	5.9% (39)	55.2% (362)	23.9% (157)	2.3% (15)	2.7% (18)

소지품 검사 빈도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1주일에 1회이상	1달에 1회이상	1달에 1회미만	드물게 특별한경우	소지품검사없 음	기타	무응답
4.0%(54)	5.1%(69)	5.5%(75)	<b>56.7%(775)</b>	26.2%(358)	1.2%(17)	1.3%(18)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규제의 경우 두발복장규제나 자율·보충학습 등에 비하면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변화가 없다는 답이 높다. 하지만 완화되었다는 답이 거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휴대전화 규제가 상대적으로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해졌다는 답이 많은 편인데, 이 역시 ‘면학 분위기’를 강조하게 된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소지품검사나 휴대전화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소지품검사강화	소지품검사완화	휴대전화규제강화	휴대폰규제완화
16.0% (105)	2.7% (18)	18.6% (122)	2.3%(1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39.8% (261)		25.6%(168)	2.3% (15)

소지품검사나 휴대전화규제의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소지품검사강화	소지품검사완화	휴대전화규제강화	휴대전화규제완화
10.4%(142)	3.5%(48)	18.3%(250)	3.3%(45)
변화없음		모름	무응답
42.0%(574)		26.6%(364)	1.8%(25)

급식의 변화의 경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답이 가장 높는데, 좋아졌다는 답에 비해 나빠졌다는 답 역시 많은 편이다.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직영급식을 규정하던 규제들이 사라진 것과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나빴”은 원래 문항에는 없는 보기이지만 기타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이 나와서 따로 분류해보았다. ‘변화없음’ 속에도 이런 의미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급식의 질에 대해서 설문지 분량 문제상 따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008년 이후 급식의 질 변화에 대한 응답 (중학생)

좋아짐	나빠짐	예나 지금이나 나빴	
9.6%(63)	23.0% (151)	1.1% (7)	
변화없음	모름	기타	무응답
45.3%(297)	16.0%(105)	1.6%(10)	4.6%(30)

2008년 이후 급식의 질 변화에 대한 응답 (고등학생)

좋아짐	나빠짐	예나 지금이나 나빴	
12.9%(176)	28.0%(382)	1.8%(24)	
변화없음	모름	기타	무응답
39.5%(540)	14.2%(194)	1.1%(15)	2.3%(32)

## 8.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 및 의견

교육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당사자인데도 교육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교육정책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기회는 애초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제고사나 그린마일리지, 휴대전화금지조례 등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정책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없는 듯하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30% 이상으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책을 잘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예외적으로 대입자율화에 관해서 고등학생들의 인지도가 높게 나온 것은 고등학생들이 특히 대학입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입자율화에 있어서 중학생들은 인지도가 매우 낮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이것이 현재 경기도지역에서만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이 또한 최근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것에 대한 응답 또한 학생들이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는 답이 높은 걸로 보인다. 실제로 인지도가 낮을수록 의견이 없다는 답이 비교적 높다. 일제고사, 그린마일리지, 고교다양화, 휴대전화금지조례 모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학생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자율화도 반대 의견이 다소 높다. 대입자율화는 중학생의 경우 찬성이 다소 많고 고등학생의 경우 반대가 다소 많은데, 중학생은 대입자율화에 대해 모른다는 답이 많고 고등학생은 잘 알거나 대략 안다는 답이 많다.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 정리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높으나, 대입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아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입자율화에 마냥 찬성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나 대입자율화 등 “자율화”라는 명칭의 정책에 대해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 [학교자율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5.9%(39)	21.0%(138)	36.1%(237)	29.1%(191)	7.8%(51)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32.2%(211)	34.5%(226)	28.2%(185)	5.2%(34)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4.8%(66)	26.0%(355)	35.4%(484)	29.5%(403)	4.2%(5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28.8%(393)	48.2%(659)	20.4%(278)	2.6%(36)

### [그린마일리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6%(135)	36.3%(238)	19.7%(129)	18.8%(123)	4.7%(31)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5.4%(101)	65.1%(427)	14.8%(97)	4.7%(31)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4.5%(198)	35.1%(479)	23.6%(322)	23.6%(322)	3.3%(45)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7.2%(235)	66.4%(907)	13.9%(190)	2.5%(34)

### [일제고사]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7.4%(180)	39.9%(262)	17.5%(115)	10.1%(66)	5.0%(33)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9.6%(63)	74.6%(488)	11.6%(76)	4.4%(29)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4%(278)	47.9%(654)	18.2%(249)	10.1%(138)	3.5%(4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5.7%(214)	72.2%(986)	9.6%(131)	2.6%(35)

### [고교다양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9.0%(59)	22.1%(145)	35.8%(235)	28.0%(184)	5.1%(33)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22.0%(144)	51.7%(339)	21.5%(141)	4.9%(32)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6%(104)	26.0%(355)	32.1%(438)	31.0%(423)	3.3%(4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8.6%(254)	63.5%(868)	15.2%(207)	2.8%(37)

**[대입자율화]**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2%(47)	16.3%(107)	39.3%(258)	31.6%(207)	5.7%(37)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44.4%(291)	32.6%(214)	18.3%(120)	4.7%(31)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1.6%(159)	38.3%(523)	28.0%(382)	18.7%(256)	3.3%(4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40.0%(546)	43.9%(600)	11.1%(152)	5.0%(68)

**[학생인권조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7.3%(48)	15.9%(104)	38.3%(251)	33.7%(221)	4.9%(32)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61.4%(403)	13.6%(89)	19.5%(128)	5.5%(36)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4.2%(58)	13.0%(177)	38.3%(523)	41.8%(571)	2.6%(35)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73.1%(998)	10.2%(139)	11.5%(157)	5.3%(72)

**[휴대전화금지조례]**

중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20.3%(133)	30.3%(199)	22.9%(150)	22.0%(144)	4.6%(30)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10.5%(69)	68.9%(452)	16.0%(105)	4.6%(30)

고등학생 인지도 및 의견

상세히안다	대략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무응답
10.8%(148)	27.0%(369)	28.8%(394)	30.7%(419)	2.6%(36)

찬성	반대	의견없음	무응답
7.4%(101)	77.0%(1052)	10.4%(142)	5.2%(71)

## 9. 지역 간 차이

지역별로 학생인권 보장 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 그리고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 변화에 대한 응답을 교차분석한 결과, 전체 비율과 비교해볼 때 영남지역(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의 학생인권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다. 2008년 이후로 학생인권 상황이 침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답 또한 영남지역이 가장 높았다. (응답이 적어서 통계적 의미가 별로 없는 제주나 강원지역은 제외) 실제로, 따로 첨부된 경남지역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자율·보충학습이 강화되었다거나 두발복장규제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대체로 보수적인 영남지역이 학생인권 상황도 안 좋으며 악화 경향도 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등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355)	1.1%	3.9%	43.4%	22.8%	22.5%
영남(88)	2.3%	3.4%	34.1%	26.1%	31.8%
호남(131)	3.8%	9.9%	46.6%	23.7%	12.2%
충청(64)	1.6%	1.6%	40.6%	28.1%	25.0%
강원(9)	0.0%	11.1%	33.3%	22.2%	33.3%
제주(0)	0.0%	0.0%	0.0%	0.0%	0.0%
전체	1.8% (12)	4.9% (32)	42.4% (278)	23.8% (156)	22.4% (147)

###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매우 잘 보장	보장	보통	침해	매우 침해
수도권(648)	0.6%	3.5%	29.9%	34.0%	29.8%
영남(274)	0.0%	0.7%	23.0%	44.9%	30.3%
호남(357)	3.1%	5.6%	47.1%	20.4%	21.0%
충청(58)	0.0%	3.4%	43.1%	31.0%	20.7%
강원(19)	0.0%	5.3%	15.8%	31.6%	31.6%
제주(2)	0.0%	0.0%	0.0%	100.0%	0.0%
전체	1.1%(15)	3.5%(48)	33.4%(456)	32.4%(443)	27.3%(373)

###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중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355)	3.4%	27.3%	28.7%	32.4%
영남(88)	4.5%	39.8%	30.7%	21.6%
호남(131)	6.9%	15.3%	23.7%	51.9%
충청(64)	4.7%	35.9%	31.3%	25.0%
강원(9)	0.0%	44.4%	44.4%	11.1%
제주(0)	0.0%	0.0%	0.0%	0.0%
전체	4.3%(28)	28.0%(184)	28.7%(188)	33.5%(220)

2008년 이후 학생인권 변화에 대한 지역별 분석 (고등학생)

	보장하는 방향	침해하는 방향	변화없음	모름
수도권(648)	4.3%	32.4%	41.4%	20.1%
영남(274)	1.8%	44.5%	35.4%	17.2%
호남(357)	4.8%	23.2%	30.3%	38.7%
충청(58)	6.9%	29.3%	46.6%	15.5%
강원(19)	0.0%	42.1%	31.6%	10.5%
제주(2)	0.0%	0.0%	100.0%	0.0%
전체	4.0%(54)	32.5%(444)	37.3%(510)	23.9%(327)

<참고자료 2>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개발연구」 중(2010년 11월)

## □ 경기도 학생인권실태조사 주요 결과

### ◎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체벌] 교사가 얼굴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손으로 때린다는 응답은 19.3%. 단체로 벌을 받는다는 응답은 45.9%. 교사가 수업시간에 벌을 주어서 수업을 못 듣게 한다는 응답은 24.8%. 체벌이나 부적절한 처벌 방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프라이버시] 가방, 소지품 검사를 당한다는 초등학생들은 10.1%이고 일기장 검사를 받는다는 응답은 60.6%. 8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일기장 검사나 휴대전화 규제 등에 대한 인권위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음.

○ [심각한 인권문제] 학교에서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 433명(12.5%) △집단 괴롭힘 330명(9.5%) △잡은 학교시험 280명(8.1%) △벌세우기 264명(7.6%) △신체적 폭력(체벌) 255명(7.3%) △일기장 검사 243명(7.0%) 순으로 대답함.

○ [학생인권 보장 정도]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17.5%,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5% 등으로 나타남. 초등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상황은 대체로 나쁘지 않으나 그럼에도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이고 자신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17.5%에 이룸.

○ [인권교육 경험] 7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거나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두발복장규제] 두발복장규제가 99.4%로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존재. 두발복장규제를 위반했을 시에는 재검사, 훈계, 악세서리 등 압수, 체벌, 별점 등으로 나타났고 강제이발이나 강제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등의 처벌도 30% 안팎의 응답률을 나타냄.

○ [강제 수업] 야간자율학습, 아침자율학습, 아침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오후.저녁 보충수업, 방학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중 40% 안팎 또는 과반수 이상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7시30분~59분 사이가 41.7%로 가장 많음. 하루 수업시간을 묻는 질문에 6~7시간이 33.5%, 5~6시간이 29.5%. 5시간 미만도 14%로 나타남.

○ **[체벌 경험]** 체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해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는 답이 35.2%, 1주 2회 이상 경험이 26.4%로 중고등학생들의 체벌 현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는 답은 6.2%에 그침. 체벌의 이유로는 과제나 수업태도, 두발복장 규정 등 위반, 지각이나 결석이 가장 많이 꼽힘.

○ **[참여와 의견 표현]**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답은 19.0%뿐임.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이 40.1%. 학생회 운영에 지도 교사나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높은 등 학생자치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차별]** 학교에서 차별 사유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이 57.3%로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싫어서가 41.2%. 나이나 학년에 의한 차별, 외모, 신체적 특징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학생이 30%대로 나타남.

○ **[수업권 박탈]**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58%의 학생들이 강제전학이나 강제자퇴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답함.

○ **[교육환경]** 보건실 사용, 겨울철 화장실 사용, 교실 냉난방 시설, 탈의실 등에 대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음. 56%의 학생들이 급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53.2%의 학생들은 고민이 있을 경우 편하게 상담을 하기 어렵다고 답함. 학교내 화장실, 도서실, 식당, 매점 등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해 55.3%의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함. 실습 기자재 등이 부족하다고 47.2%의 학생들이 답함.

○ **[인권 보장 정도]**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30.5%,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20.3%로 50.8%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

○ **[시급한 개선 사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두발규제 → △복장규제 →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 △단체기합 및 체벌 순으로 조사됨.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입시경쟁 해소 →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및 선택권 부여 순으로 나타남.

○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찬성 87.4%), 의견없음 11.3%, 반대 1.3% 순으로 나타남.

## ◎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인권교육 필요성과 경험]**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97.1%이지만 53.8%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음. 인권교육 실시에서 어려운 것은 안정적인 시간 확보, 인권교육 내용에 자신이 없는 경우 등이 꼽힘. 교사가 된 후 인권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는 17.3%밖에 되지 않음.

○ **[학생자치권]** 교사들은 학생회자치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학생회칙 제정과 개정의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간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교환 및 조율이 필요하다, 학생회 건의 사항을 교직원회의 등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등 학생 자치권에 대해 80~90%의 높은 찬성률을 보임.

○ **[체벌 대체 수단]** 체벌을 대체할 수단으로 상담전문가와의 상담과 치료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2%,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3.2%. 또한 노동이나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첫 번째 과도한 교사업무 경감, 두 번째 과밀학급해소, 세 번째 학생 간 폭력금지, 네 번째 일제고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상벌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체벌이 여전히 존재,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짐을 꼽음.

○ **[학생간 폭력 대안]** 학생 간 폭력, 금품갈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운영 강화가 34.5%,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가 28.3%,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교육이 18.4%, 인권교육 실시가 14.8%.

○ **[교육환경]**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 남녀 탈의실 마련, 학생휴게공간 마련, 냉난방 시설, 보건실 확보, 별도의 상담실 확보 등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높음.

○ **[강제수업]** 정규수업외의 특기적성수업, 방과후학교 수업, 자율학습 참여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강제적인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6.9%로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 보장에 긍정적.

○ **[시급한 개선 사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을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로는 야간자율학습 및 강제 과잉학습을 꼽음. 학생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입시경쟁해소 → △인권교육 강화 →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 △노후한 교육시설 개선 →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보장 순으로 선택함.

## ◎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정보접근]** 학생생활관련 상벌규정 및 성적관리 규정이 보호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다 56.5%,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30.1%, 잘 모르겠다 11.4%. 40% 가량의 보호자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낌.

○ **[징계 변론권]** 학생 징계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29.3%, 형식적으로만 보장된다 24.1%. 잘 모르겠다고 29.9%로 징계와 관련한 당사자 의견진술 보장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 **[학생인권 보장 정도]**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조금 침해 29.3%, 매우 침해 8.4%로 많은 보호자들이 제대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획일적인 학교 규정(18.9%), 입시 위주의 교육(17.1%)을 꼽고 있음. 교직원의 변하지 않는 인권의식(15.3%)과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구조(13.0%), 보호자 및 성인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11.1%)과 체벌 및 징계(10.5%)도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목됨.

○ **[시급한 개선 사항]**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개를 꼽아달라고 한 것에서는 22.8%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집단따돌림)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14.8%)과 학생의사표현 규제(14.2%)라고 응답. 학교에서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꼽아달라고 하자, 가장 많은 보호자가 △권리 중심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22.8%), 그 다음으로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14.8%), △개인정보 공개 및 유출 방지대책 강구(14.2%)라고 응답.

### ◎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 상황 관련 면접조사 결과

○ 장애, 성소수자, 빈곤, 이주(다문화), 한부모 등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은 인권교육의 강화였음. 장애이해,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한 실질적 성교육, 다문화 이해, 한부모 등에 있어서 학생,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나 드러내기 어려운 성정체성 같은 경우 구제기구를 통한 구제가 어려울 수도 있음. 피해자에 대해 상담 서비스나 관련 단체를 소개시켜주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 필요함. 개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학교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 조례의 문구보다는 교육청의 지속적 정책 접근이 요구됨.

[둘째 마당]

## 학생인권 기준 이해하기

한날 Ⅱ 인권교육센터 '들'

[ppt 자료 참고]

## 인권을 만난 청소년, 금지된 것을 꿈꾸다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스무고개 한 번 해볼까요?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 우리는 이름표가 박힌 거무튀튀한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매일 집을 나섭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죠. 그곳을 지키는 분들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 집단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겁니다.
- 우리를 거리에서 보려면 아주 이른 아침이나 아주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웃거린다는데, 그건 주로 낮 시간에 우리를 찾기 때문이죠.
-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30여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입니다. 다들 밤에는 위험하다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 학원에서 나오는 우리를 보고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 우리에게겐 미숙하다, 충동적이다, 판단력이 흐리다, 쉽게 휩쓸린다, 싸가지 없다, 무섭다,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등의 나쁜 꼬리표가 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 우리도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다른 사람은 집을 나와 새 동지를 마련하면 '독립'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비행'이라고 불립니다.
- 휴대폰을 마련하든, 소송을 하든, 셋방을 구하든, 일자리를 구하든, 뭘 하려면 부모나 다른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법률 무능력자'라는 말이지요.
-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비교적 가벼운 벌을 줍니다. '미숙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지요. 권리가 없는 대가로 주어진 유일한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 대신에 우리가 심한 모욕을 당하고 언어맞아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가해진 폭력은 대개 잘 드러나지 않거나 폭력이라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대개 우리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사랑이나 교육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고개를 숙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가야 하는 곳에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써야 할 처지에 자주 놓입니다.
- 우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겐 선거권을 포함해서 아무런 대표권이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늘 우리를 대리해 주지요.
- 우리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랑 살고 싶은지 또는 사는 게 좋은지만 주로 고려되니까요.
-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주는 대로 감사히 받고 한달 살림을 빠듯하게 맞춰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자연스레 보게 됩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는 것이지요.
- 우리가 일자리를 얻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적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고도 감사한 줄이나 알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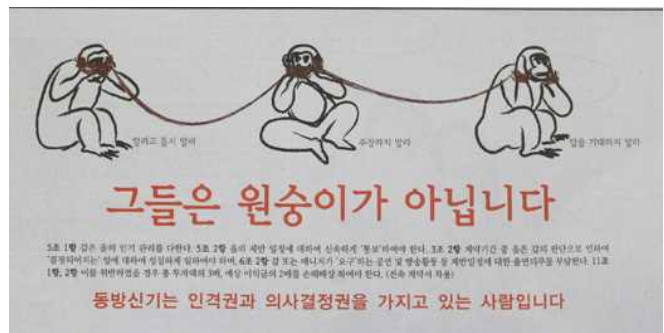
식의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는 '실업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우리들 중에는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스무 명에 한 명꼴로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고, OECD 국가 중 우리들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몇 가지 힌트만 보고도 쉽게 정답을 떠올렸을 겁니다. 정답은 바로 청소년이지요. 청소년의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유쾌한 것보다 꿀꿀한 것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 누군가에게 의존 또는 속박 당해 사는 존재, 현재를 빼앗긴 채 미래를 위해서만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존재, 권리는 없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있는 존재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필요한 이유는 누구나 존엄하고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은 청소년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청소년에게는 인권이 쉽게 부정될까요? 청소년과 인권이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의 방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2009년 9월 동방신기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가진 불공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을 때, 동방신기 팬클럽은 “그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한겨레>에 실었습니다. 소속사가 중요한 계약은 동방신기를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동방신기의 문제제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 곧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이라는 ‘개념찬’ 해석을 내놓은 것이지요.



1987년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의 함성이 크게 울려

퍼진 해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여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했고,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건설을, 학생들은 민주적 학생회 건설을 소리 높여 외쳤던 해였지요. 그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첫 민주노조를 건설했을 때 공장 안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이 바로 ‘두발 자유’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두발 통제가 있었고 공장 문 앞에서는 관리자들이 바리깡을 들고 단속을 벌였다고 해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도 아니고 두발자유를 제일 먼저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군대나 다름없는 통제와 핍박에 내몰렸던 노동자들에게 공장 문 앞에서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은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굴종과 체념,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의 상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자기 머리카락 하나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인격과 자율성이 있었겠습니까? 노동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먼저 동물이 아닌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청소년도 인간이다!”, “청소년에게 모든 인권을!”이라고 외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청소년



년의 삶을 동물의 삶에서 사람의 삶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 금지된 것을 상상한 청소년, 무슨 일이 생겼나?

청소년의 인권 현실이 어떠한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복도를 지나다 몽둥이로 체벌을 가하고 있는 교사를 목격했습니다. 학생은 교사가 휘두르는 몽둥이를 붙잡고 “선생님, 그만하십시오.”라고 말했지요. 그 학생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학교는 그 학생을 곧장 퇴학시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사회는 폭력이 나쁘다고 가르칩니다. 힘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반 친구들이 둘러서서 구경만 한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들 청소년들의 폭력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폭력을 중지시킨 이 학생에게는 퇴학이라는 중징계가 돌아왔습니다. 법률도, 사회 통념도 교사에게 학생을 때릴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다 학생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한 학생은 학교의 두발규정이 왜 필요한지, 인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대답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한 학교가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니 민주적인 규정이니 따라야 한다는 억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학생답다는 기준은 과연 누가 정한 것인지, 머리를 기른다고 해서 수업에 정말 방해가 되는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두발의 자유라는 인권을 제한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도 들어가지 않는 데 과연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그 학생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정당한 이유를 대기 전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자기 존재를 걸고 두발규정의 정당성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반응은 목살 아니면 ‘학생이 멋이나 부리려 한다’는 비아냥뿐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단속에 걸릴 때마다 벌점을 받아야 했고 결국 교내봉사에 이어 사회봉사 처분이라는 징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학교에서는 ‘순종 천국, 반항 지옥’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질서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학교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제고사 부활, 고교선택제 도입, 특권형 자율학교 지정 등 더욱 살벌해지고 있는 입시전쟁은 청소년을 한낱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정서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의 폭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청소년의 인권보다 절대적 우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sup>1)</sup> 반면 친권의 횡포에 맞서 청소년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는 자녀 사랑과 양육, 보호 등의 이름으로 청소년의 현재를 속박하고 진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모의 ‘폭력’이 흔히 일어납니다. 일상 곳곳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력을 갖습니다. 대개 부모의 자녀 보살핌은 대개 헌신과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헌신과 보호가 넘쳐나는 만큼 자녀의 성숙은 지체되는 결과를 빚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한 단체에서 마련한 청소년 독서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에 빠지려면 부모님 동의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니, 보충수업을 듣든가 학원에 가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학생은 결국 무단으로 보충수업을 빠지면서 독서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용돈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독서모임을 포기해야 했지요. 또 한 학생은 강제이발과 체벌을 수시로 행하는 교사를 처벌해달라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일방적으로 민원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행여

1) 민법에서는 친권(親權)의 구체적 내용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재산관리권(이상 법 913조-916조) 등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915조에서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학교에 찍혀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했던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자기와 친구들의 인권문제를 공식 해결하고자 했던 청소년의 의사는 부모에 의해 사뿐히 무시되었습니다.

일부 기독교에서 선교를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입양선교' 역시 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불평등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선교란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입양한 후 양부모가 그 아이를 선교사로 길러 그 지역으로 다시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현지 아이를 입양해서 선교사로 만드는 길을 택한 것이지요. 그 아이가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양부모가 믿는 종교를 정말 믿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양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장래를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제노사이드'(Genocide)의 한 형태로 활용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어떤 민족이나 집단의 절멸(絶滅)을 목표로 자행되는 살해행위입니다. 생명을 직접 빼앗기도 하지만, 후세를 낳지 못하게 하거나 문화를 말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호주로 이주해온 백인들이 원주민의 자녀를 백인가정에 입양해 원주민의 문화를 뿌리 뽑고자 했던 일이 대표적이지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군부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가의 자녀들을 빼앗아 협력자의 가정으로 입양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정권의 협력자에게 일종의 선물을 주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지만, 협력자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장차 정권 협력자로 성장할 거란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두가 청소년이 독자적인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속박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사건'을 구성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토록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이유는, 청소년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점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살펴보고, 그 지배적인 관점이 과연 정당한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프레임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는 학생, 회사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남성을 대상으로는 장발단속이, 여성을 대상으로는 치마길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미니스커트 단속을 어떤 문제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모호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부분적 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왜 남성의 머리 길이는 짧게 하지 못해 안달했던 국가가 여성의 치마 길이는 길게 하지 못해 안달했는지를 전혀 말해주지 못하니까요. '남성적 국가가 여성의 인권, 그 중에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해야 진실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도덕교과서에서는 이 장면을 터무니없이 '세대갈등'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 장면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해석의 틀에 따라 진실이 가려지기도 하고 진실의 일부만 포착되기도 합니다. 인식의 프레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모습

어떤 사회집단을 바라보는 인식의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사회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보호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옥죄는 대표적인 인식의 틀(frame)입니다. 청소년은 위협에 처하기 쉬운

약자이기에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한다는 관점이 바로 보호주의이지요. 이 틀에 따르면 청소년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힘이 없고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촛불소녀'를 아시나요?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하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2008년 한해를 불태웠던 그 촛불집회의 상징이 바로 촛불소녀였습니다. 당시 위협에 빠진 건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촛불을 켜든 이들이 바로 십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촛불소녀가 촛불집회의 상징이 되는 건 당연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무슨 죄냐, 우리들이 지켜주자'라고 쓰인 피켓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의 부름 없이도 연단에 올라가 재기발랄한 연설을 토해냈던 청소년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두렵지 않느냐!'는 으름장으로 정부를 추궁했던 당당한 청소년들의 모습은 차차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열시가 되면 '청소년의 귀가'를 외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촛불의 주역으로, 재기발랄한 정치적 주체로 청소년이 등장하는 순간,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재배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촛불 바깥에서도 청소년 보호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보수논객으로서, 촛불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갑제 씨는 '서울 광화문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공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라는 인식, 그리고 사회가 있으라고 명령한 곳을 이탈한 청소년을 낯설고 위험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대리주의'도 한 몫 거둡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대신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학교의 교칙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는 들어가도 학생대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충수업을 빠질 때도, 학교수업 대신에 체험학습을 떠나는 순간에도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년은 스스로 판단내릴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일까요? 생물학적 나이로 20살이 되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성숙한 인간으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삶의 전 과정이 성숙을 향해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늘 어떤 점에서는 미성숙하지 않을까요?

진짜 후보가 여기 있다! 7.30 서울교육감 선거

**개발랄한 젊은 후보**

못 뽐으니까 나와봤다네!

이판 교육 받으면 이명박 된다!

★ **개발랄한 핵심약속** ★

입시경쟁NO 다양&평등 교육으로-  
0교시, 강제야자, 보충수업, 우열반 인당!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인권보장!  
영어교육정상화, 영어는 **듣기와 외국어일뿐!**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청소년 참가 Go~**  
교사소환제/인건교육 등, **별보단 소통과 변화**  
탈학교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현장경험 풍부 시험만 공부해본!

**서울시 교육감 후보**

**기호 연 정/소년**

http://csn08.tistory.com \* 실제와 동일한 후보가 아니다.

정소년이 교육의 주인되는 그날까지!

**NO.0 레알 교육감 후보 정/소년 Zero**

어른들의 꼭 막힌 귀를  
살길 하라

못 뽐으니까 또 나왔다  
청소년이 직접 한다!

정소년에게  
교육권이 있을!

정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기호연 청소년**

입시경쟁, 시험치욕 크만!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야자보충 반말!  
식욕 돋는 학교, 꿈을 꾸는 학교!  
빠져도 되지만 빠져가 싫어지는 학교!  
자벌은 없고 자이는 존중받는 교육으로!  
학생에게 권력을! 학생에게 임금을!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잡히까지 마땅!

이 포스터는 2008년과 2010년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비공식 출마한 '기호0번 청소년 후보'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당돌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청소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정책인데,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청소년은 왜 참여할 권리가 없냐는 것이지요. 더 이상 '자비로운 어른'에 의해 대리되는 존재로만 만족하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주인님을 모신다 해도 노예는 노예에 불과하다, 현장경험 풍부한 청소년이야말로 자기에게 좋은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가장 잘 판단할 힘이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을 빼고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당선시킨다고 해도 반쪽 선거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호주의와 대리주의라는 인식의 프레임 밑바탕에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오늘의 권리, 지금 바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은 '유예'되어야 하고 성숙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들의 '훈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속박해야 하는 유예의 삶,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기보다 힘을 쥔 타자에 복종해야 하는 삶이 의무로 주어져 있기에 청소년의 인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권을 빼앗긴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리스 영(Iris Young)이란 사회학자는 『정의 그리고 차이의 정치학』(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라는 책에서 인권을 빼앗긴 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억압을 유형화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없는 존재이고, 사회의 중심부로부터 배제·분리된 주변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포획되어 대상화되기 쉽고, 그들이 수행하는 일은 가치 절하되어 있으며,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아이리스 영이 제시한 억압의 양태에 청소년의 삶을 대입시켜 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청소년은 정치적 힘이 없기에 그들의 목소리는 좀체 들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집, 학교, 학원만을 오가면서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미성숙하거나 위험하거나 충동적이라는 집단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어 한 사람의 잘못도 청소년 전체를 위험 집단으로 부상시키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청소년의 학습노동은 대가를 지불받고 수행하는 사회적 기여로 평가되지 못하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청소년의 노동은 값싼 노동으로 취급받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대는 부모나 교사의 사랑이나 열정적 지도로 둔갑해버려 근절되지 않습니다. 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덮어버리는 불평등이 청소년의 삶에 가로 놓여 있는 셈이지요.

청소년이 이와 같은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격과 자율성을, 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을 옥죄고 있는 지배적인 인식의 프레임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은 '미성숙의 신화'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 세상을 뒤집는 질문, '미성숙하다'와 '미성숙해지다'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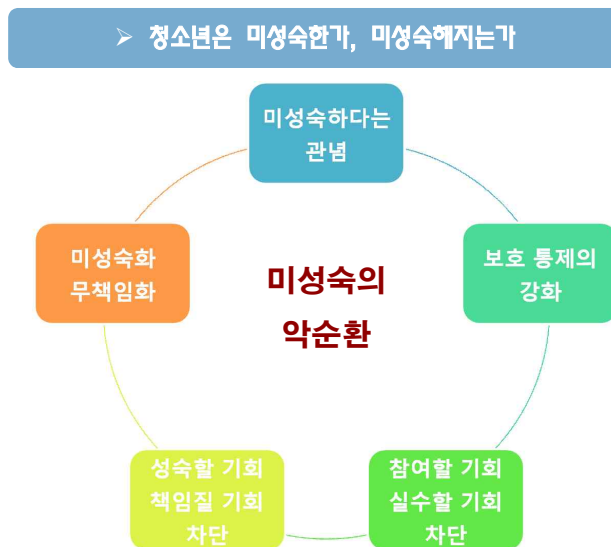
청소년에게서 미성숙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특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누군가의 '보호와 대리결정' 아래 있어야 하는 존재, 훈육돼야 할 과도기적 존재로 바라보는 관념은 근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es)라는 사회학자에 따르면,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아동기(childhood)라는 관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성인과 아동의 생활세계 역시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sup>2)</sup> 아동은 크기가 작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아동의 옷이나 놀이, 아동만의 분리된 공간이 따로 존재

2) 필립 아리에스, 『아동의 탄생』(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문지영 옮김, 새물결, 2003). 아리에스에 따르면 근대 이전 시대에 가족은 생산과 소비, 생산과 재생산의 통합된 단위였기 때문에 아동은 어려서부터 성인세계에 진입하여 가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가족 내에서도 양육과 부양, 가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동은 가족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었던 것이지요. 기술이나 지식, 가치, 예의범절 등이 전수되는 과정도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이 성인들의 생활세계에

하지 않았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관직에 올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순진무구하고 미성숙함을 특징으로 하는 ‘아동기’라는 개념이 출현했고 이러한 개념을 생산하고 뒷받침하는 제도들도 발명되었습니다. 아동의 미성숙이 강조되면 될수록 아동을 외부세계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아동이 알아서는 알 될, 보아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비밀의 세계, 어른들만의 세계도 확장되었지요. 아동은 어른이 허용한 공간과 시간, 지식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양육되고 훈육돼야 할 존재가 됐습니다.

아동이 있어야 할 곳으로 새로이 지정된 대표적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학교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이 섞여 배움을 익히는 곳이었지만, 근대 이후 학교는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학생이라는 말이 아동의 동의어가 된 것도, 같은 학년이 같은 나이와 동의어가 된 것도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기도 어린이기와 청소년기로 점차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근대 세계에서 아동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족과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 밖’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가족과 학교는 인권의 원리가 부정되는, 사적(私的)이고 비정치적, 비사회적 공간으로 생각되었으니까요. 이와 함께 아동은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근대의 아동은 보호를 얻은 대신 자유를 잃게 됐습니다. 근대의 아동에게는 가족과 학교가 ‘동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정치적 ‘유배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성숙함은 열등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성숙한 존재들에게는 보호와 통제가 따라붙습니다. 어리니까 제외되고 모자라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것을 경험할 기회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기회도,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도, 원하는 변화를 일으켜볼 기회도 점차 멀어집니다. 실수할 기회, 배울 기회를 놓친 사람이 그만큼 성숙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성숙해지고 무력화되기 마련이지요. 무지(ignorance)와 무권력(powerless)을 특징으로 하는 기나긴 아동기가 악순환되는 바퀴는 이렇게 굴러갑니다. 결국 청소년이 원래부터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다는 신화와 그 신화가 불러낸 보호와 통제의 제도·관행들이 청소년을 미성숙하게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군가의 보호가 철회되었을 때나 바로 그 보호자가 보호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할 때 폭력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폭력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폭력의 가해자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을 불러일으킨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청소년이 이러한 무기력증에 빠져있습니다. 한 청소년 동아리에서 차별에 관한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 격론이 오고가던 끝에 결국 차별 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통제가 없으면 엇나간다,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지요. 자신도 동료도 신뢰할 수 없어 스스로 통제자를 초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성숙의 굴레가 가져온 가장 참혹한 결과일 것입니다.

미성숙의 신화는 역사적으로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차별과 배제, 억압을 유지시켜 온 굴레였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옛 노예의 후손인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어낸 것도 20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여성도 흑인도 예전에는 스스로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인권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스로 미성숙의 굴레를 깨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도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미성숙의 신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흐름은 이미 거대한 국제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 인권, 전환의 물결이 일다

19세기말 영국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어 '동물학대금지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만 취급됐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동을 보호할 독자적 법률은 동물을 보호할 법률보다도 뒤늦게 출현한 셈이지요. 20세기에 들어서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해 두 차례의 큰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환은 20세기 전반기에 찾아옵니다.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의 생활세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아동중심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924년에는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최초의 국제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제네바 선언'<sup>3)</sup>이라 불리는 이 선언은 아동은 기아나 재해, 전쟁 등의 위협에 처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관은 당시로는 획기적이었지만, 앞서 살펴봤던 보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돌봄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는 '동물'의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니까요. 두 번째 전환은 20세기 중반에 찾아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 인간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올린 것은 권위주의에 찌든 학교였습니다. 그들이 던진 비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왜 교문 앞에 멈춰서 있는가.<sup>4)</sup> 당시 청소년들과 그들을 지지했던 이론가들이 내걸었던 요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1) 공장법이나 아동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우리를 착취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하지만,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법률 역시 우리가 '부모 아니면 국가, 즉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관점에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제네바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4) 1960년대 후반 세계 곳곳에서는 '68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평화, 흑인해방, 여성해방, 동성애자해방, 학생자치 등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됐던 것이지요.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는 억압적인 교칙과 교수-학생 간의 불평등, 주입식 지식교육을 조롱, 비판하는 저항 흐름이 큰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5)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은 아동의 인권을 부모가 양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학생들의 재학

기초해 있다.

(2)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의무교육은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를 없다.

(3)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학교운영에 학생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규율의 제정과 커리큘럼의 결정에까지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결사의 권리: 학생에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고 동맹휴업과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학교에서도 학생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교장이나 교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sup>5)</sup>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6) 용모를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 부모에게 교복 착용의 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은화한 형식의 갈취'이며, 학생 자신이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7) 표현의 자유: 교지, 동아리, 학회 활동 등에 대한 자의적인 검열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기숙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편지에 대한 검열도 폐지되어야 한다.

(8) 차별의 폐지: 차별은 우리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일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9) 신앙 활동의 자유: 우리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 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10)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우리는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性),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 온 역할, 술이나 담배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된다.

그 외에도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적 자유를 인권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실수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make his own mistakes), 선거권, 후견인의 선택권,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sup>6)</sup> 사람들마다, 조직마다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달랐지만 아동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에게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았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꾸준히 이어지자 어린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케케묵은 생각들이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서명을 받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세계청소년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떠한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언과 참여가 늘어나자 선거연령도 18세, 17세로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조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 결과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역사적인 탄생을 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국제법 수준으로 끌어올

---

(在學)과 동시에 학교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통제권을 위임받았기에 때문에, 학교의 교육활동에 어긋나는 학생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대위설은 아동 자신의 인권이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존 홀트(John Holt)라는 교육학자는 『아동기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hildhood, E. P. Dutton., 1974)라는 책에서 아동에게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여행권, 후견인 선택권, 안정된 수입을 받을 권리, 자신의 학습을 통제할 권리, 술·담배 복용과 운전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린 이 협약은 '4P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4P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차별 없이 이 협약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보호(Protection)의 원칙',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제공(Provision)의 원칙', 어린이와 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예방(Prevention)의 원칙',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협약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쉼 권리, 전쟁·사법절차 등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지원받을 권리, 경제적·성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운동들의 주요 유산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당돌하고 개발랄한 청소년, 다른 질서를 꿈꾸다

앞서 1960년대 후반 서구사회를 달구었던 청소년들의 외침을 만나고 나서, 지금 이 땅의 청소년들의 외침과 너무나 똑같아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비록 40여년이나 뒤쳐지긴 했지만, 거대한 전환의 물결은 이 땅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때론 당돌하게, 때론 엄숙하게, 때론 개발랄하게 청소년을 대하는 기존 질서와 관념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지요.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sup>8)</sup>에서는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면서 '2008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 선언 중 눈에 띄는 몇 가지 조항을 옮겨온 것입니다.

- ♪ "미성년자"라는 말은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이야. "미성년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려자!
- ♪ 처음 만나서 나이 좀 많다고 곧장 반말하거나 막 대하는 건 정말 똘~ㄱ.
- ♪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인권침해 현장에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 "예의"나 "학생의 본분", "자식의 본분" 같은 말로 우리의 정당한 인권을 위한 행동을 공격하거나 하면 못 써.
- ♪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거짓된 핑계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짬질방, 게임방, 노래방 등에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 거리를 지정하거나, 섯 다운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통제라구!
- ♪ 교사, 교장,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대통령 등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들을 선택할 수도 탄핵할 수도 있어야 해.
- ♪ 청소년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동시킬 수 없어. 예를 들면, 봉사시간을 채워오게 하거나 다른 강압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참여하고 싶지 않은 행사에 강제로 참석시켜서는 안 돼.
- ♪ 가출은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 만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적극적 표현 방식일 수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독립적 주거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해.
- ♪ 청소년에게는 나이와 성적 지향(동성애, 이성애 기타 등등), 성적체성에 상관없이 짱사랑하고 연애하고 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7)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이 설립된 직후 발표된 문서로서,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이고 규범력이 높은 인권선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2006년부터 청소년과 비청소년이 함께 모여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학생인권보장, 십대페미니즘 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등이 중심 활동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http://cafe.daum.net/youthhr>)를 참고하세요. 저도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때리지 좀 마! 교사나 부모(보호자)나 다른 어른이나 또래나, 누구든 우리에게 매질, 발길질, 주먹질, 기합, 모욕 등의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이유라도 그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될 수 없어. '사랑의 매'는 거짓말이야.

♪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강제로 종교의례에 동원하거나 헌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종교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마!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믿는 종교를 청소년들이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지 마. 국가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사라져야 해.

♪ 청소년은 잘 싸 권리가 있어. 수업시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이 급한데 못 가게 하거나 하면 안 돼. 병 걸리면 책임질 거야? 화장실의 청결 상태나 시설, 숫자도 충분히 좋아야 해.

♪ 학교에서 체력검사나 신체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 등 의료상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거나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가족들에게 알려선 안 돼.

이 선언문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당히 논쟁적인 권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어떤 권리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무 과하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권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권리가 출현하게 된 맥락과 선언의 작성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는 일입니다. 이 선언을 읽으면서 각 권리에 해당하는 장면이, 작성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자연스레 떠오른다면, 선언의 작성자들이 꿈꾼 '다른 질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4>

\* 인권교육센터 '들'에서는 2007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 작업에 참여했다. 이 지침서의 주요 내용이 [뽕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로 인터넷 매체 <인권오름>에 13차례 게재됐다.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지침서> & 학생인권마술피리 연재기사 내려 받을 곳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다음카페 자료실

##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쇳말

### [뽕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 변화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원칙

- 배경내

#### ‘배틀 로얄’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자

“오늘, 처음으로 친구를 죽였다.” 헉, 이 끔찍한 말은 대체……. 몇 년 전 국내에 개봉됐던 영화 <배틀 로얄(Battle Royal)>은 등교거부와 교내 폭력이 넘쳐나는 가까운 미래의 일본 이야기다. 수학여행을 가던 42명의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로 납치된다. 어리둥절한 학생들 앞에 나타난 교사. 그는 3일 동안 최후의 1인이 살아남을 때까지 각자 주어진 무기를 갖고 서로를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섬뜩한 상황으로 학생들을 몰아넣은 건 정부가 만든 ‘배틀 로얄 법’. 더 끔찍한 건 영화 속 이야기가 한국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닮아있다는 것이다.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경쟁교육에서 우정(연대)의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있을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공간에 대체 누가 신뢰와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2007년 한해 중고생 20명 가운데 1명이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는 나라. 교사와 학생이 적대감과 공포만 키워가는 학교. 이런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정부는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가혹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이 한국형 ‘배틀 로얄 법’은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평등한 교육에 대한 권리마저 시궁창에 내던져 버린다. 생각할 짬과 우정을 나눌 여유를 빼앗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물론 그 동기마저 꺾어버린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상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여할 사람이 없는데 참여권이 보장된들 뭐하나.



▲ “오늘, 처음으로 친구를 죽였다” 는 섬뜩한 문구가 눈길을 잡는다. 영화 <배틀 로얄>의 포스터.



▲ 학교자율화 조치에 반대하는 청소년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청소년들 [출처: 교육희망]

‘인권이 사라진 교육’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학생들을 어떤 교육으로 초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략된 사회. 경쟁에서 살아남은 1%만 챙겨서 데려가겠다는 학교. 배틀 로얄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인권이라는 주춧돌 위에 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술피리를 힘차게 불어야 한다.

### 벨릴리 마술피리의 첫 소절 : 열 가지 열쇳말을 기억하자

마술피리의 첫 소절은 똑딱똑딱 학교를 고치기 위한 설계의 원칙부터 분명히 하는 일이다. 철학이 올바르고 명확해야 기반공사가 탄탄해진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들과 교육 관련 국제회의의 결의들 속에 담은 이미 나와 있다. 남은 일은 그 원칙을 거르게 삼아 학생인권을 갉아먹는 학교 구조와 문화를 걸러내는 일뿐.

#### 학생인권 마술피리 첫째 소절 :

####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열 가지 열쇳말

1. 학생을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 대하는 학교
2. 참여와 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4. 감당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5.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학교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하는 학교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9. 교사의 권한과 역량을 존중하는 학교
10. 권리를 회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첫 출발은 학생 역시 권리의 존엄한 주체라는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다. 학창시절은 인권이 유보된 대기실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8>을 통해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첫째 원칙

의 거르개에 학교를 집어넣어 볼까. 학생의 인격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언어폭력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반성문을 쓰게 하는 관행들,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제 소지품검사 등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학교가 참여와 결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 학생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고 변화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장식에 불과한 참여, 이름뿐인 참여, 결과를 이미 조작해둔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5>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가장”하지 말고 “적정한 비중을 부여”할 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원칙의 거르개로 학교를 걸러볼까. 왜 학생의 동의를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만나, 학교생활규정을 만들고 고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나, 머릿수 채우기 위해 학생을 이런 저런 행사에 동원하는 게 교육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셋째,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하고 차별에 맞서야 한다.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4년 12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E/CN.4/2005/50)를 통해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을 성적순으로 갈라놓고 우등생만이 학교의 명예를 빛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정체성을 탐색할 기회가 자유롭게 열려 있는지, 학교 환경과 교사들의 발언이 여성의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를 세 번째 원칙은 되묻고 있다.

넷째 원칙은 교육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정당한 교육의 궤도에서 이탈한 것이다. 학생은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료들 고발하고 적발하도록 만드는 선도부의 존재,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왕따, 견디기 힘든 학습부담, 운동기개로 내모는 학생선수 육성 관행 등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

다섯째 원칙은 ‘책임 먼저, 자유는 나중’이라는 공식의 잘못을 꼬집는다. 책임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은 질서에 대한 강박증이나 강압적 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경험으로부터 길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격려 받을 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힘도 기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과도한 규정으로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생각을 거짓으로 고해야 하는 학교, 전단지나 서명용지 하나 돌리면서 쫓겨날 각오까지 해야 하는 학교는 과연 정의로운가.

여섯째 학교는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인 만큼, 학교에 오기 전과 학교를 떠난 후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젯밤 술 취한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휘청거리는 마음으로 겨우 학교를 나온 학생을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주는 학교, 도와달라고 보내는 학생의 간절한 눈빛을 읽지 못하는 학교,



▲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모습. 선도를 맡은 학생들이 일일이 친구와 후배들을 쫓아다니며 동태를 살펴 보고한다. [출처: 교육희망]

강이나 안전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자유를 구석에 몰아넣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다. 이를 테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지도 못하게 하는 조치는 과연 정당한지 말이다.

여덟 번째 원칙은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이다. 학생 인권 보장을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뤄두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질문을 옮겨야 한다. 학교 안 자원만으로 부족하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 밖 자원을 끌어들이면 어떨까.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를 교실수업으로 초대하는 학교, 지역사회의 현안에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는 학교,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을 적극 소개해주는 학교에서 학생은 연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홉 번째는 교사를 학생인권의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로 초대하려면 그들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2000년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다카 행동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은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700명의 학생이 단 한 개의 화장실 밖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충암중고의 현실은 징계 위협에도 거리로 나선 교사들의 용기 덕분에 알려질 수 있었지만, 그런 용기를 모든 교사에게 요구할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고 길들이는 교원정책은 교사의 인권은 물론 학생의 인권까지 후퇴시키게 된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험값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서 과연 돌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일곱 번째는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학생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었나’뿐 아니라 ‘어떻게’ 주었는지도 함께 질문되어야 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4>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건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상호불가분성의 원칙은 학생의 건



▲ ‘똥 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학교 앞 시위에 나선 충암고 교사들. 학생인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사들의 권한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출처: 교육희망]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 관련 분명한 법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다.

마지막 원칙은 권리를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학생은 인권침해를 겪었다 해도 침해를 호소할 기회도, 그 호소를 경청받는 경험도 갖기 힘들다. 2006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A/61/299> 보고서는 ‘아동과 그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모든 아동이 그 절차를 알고 있어야’ 아동폭력에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학생을 침묵과 체념 속에 가둬두게 하는 것은 또 한 번 인권을 침해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열 가지 열셋말은 학생 인권 설계도를 그리는 기본 원칙이다. 마술피리의 다음 소절에서는 구체적인 인권지침을 만나볼 수 있다. 뽀뽀리 뽀뽀리~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

배경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http://dlhre.org>)의 상임활동가입니다.

인권오름 제 102 호 [입력] 2008년 05월 06일

#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넘기 1

## -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논리 개발

배경내 || 인권교육센터 '달'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보수 단체나 언론이 제기하는 주요 비판논리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논리는 대개 '학생은 미성숙하다'(미성숙론), '학생은 보호 대상이다'(보호주의)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지만, 좀더 세부적인 반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반교권론 : 학생은 성인과 다르다. 배우는 지위에 있다. 훈육이 필요하다. 조례는 교권을 위축시킨다. 최소한의 학생 지도통제권을 교사가 가져야 한다.
- 학습분위기 저해론 : 멧 부리는 데나 신경 쓰고 야자보충도 맘대로 빠지고 하다 보면 학습분위기가 훼손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압할 수 없다면 학습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 정치화론/ 흥위병론 :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든다. 학생을 선동한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을 촛불흥위병으로 키우려 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 상위법 위반론 : 초중등교육법이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데 조례는 체벌을 금지하니 상위법 위반이다. 규정 제정권은 교장에게 있는데 조례가 그 권한을 침해하니 상위법에 저촉된다.
- '요즘 애들' 론 : 요즘 애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많을 줄 아나. 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시대다. 폭력적인 학생, 주의력이 결핍된 학생, 여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학생에게는 권리보다 책임과 인성 교육이 우선이다.

아래 주요 신문기사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글을 참고하여 우리 스스로 대안 논리를 개발해 보자.

### 체벌 전면 금지,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일보]

2010.07.22 00:27 입력 / 2010.07.22 00:27 수정

학생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일 뿐일까.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한 방침을 놓고 교원·시민단체들이 저마다 환영과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체벌 금지 조치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전교조와 한국교총 관계자로부터 각각 들어봤다.

## 찬성 “인권 존중 교육의 출발점”



조성범  
전 교 조 편집실장

체벌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안 된다는 주장과 다만 생활지도상 불가피하다는 일부의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학생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을 고유한 인격체로 보느냐, 아니면 학생을 훈육(訓育)이나 관리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요즘 학생들의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행동이 통제 불능의 상태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라는 것은 학생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체벌을 해서라도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자적 소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른바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이다.

체벌의 직접적 원인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다.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고, 갈등의 씨앗이 생기게 마련이다. 야간 자율학습 불참을 둘러싼 갈등, 두발 길이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갈등이 촉발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불손한 언행이 교사의 심기를 건드려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합리적 지도 기준이 없고,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기준에 근거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을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학생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체벌에 의한 지도의 효과는 즉각적이다.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교사는 체벌을 포기하기 어렵다.

체벌이 교육적일 수 있을까. 체벌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의 감정을 격화시킨다. 체벌을 당한 학생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순종하지만 결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불안감과 공포, 정신적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체벌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폭력의 위험성에 둔감해지면서 학생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체벌을 금지하면 추락한 교권은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체벌의 목적이 교권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논리는 당황스럽다. 체벌 금지가 교권 훼손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체벌 금지를 오히려 교권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권은 ‘교사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또 체벌을 금지하면 교사를 교육의 방관자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가 체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심각한 주장이다.

최근의 잇따른 학생 체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근거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 학생의 인권 보장이 교사의 교권과 충돌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인권이 아니다. 따라서 수업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도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주체적 인간으로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행복해한다면 한쪽의 인권이 보장되고 커진다고 해서 다른 쪽의 인권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풍토는 교사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 기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체벌을 대체할 학생지도 방법을 찾기 위한 교육주체들의 진지한 노력이 있



어야 한다.

조성범 전교조 편집실장

### 반대 “최소한의 학생지도권 박탈”



**하석진**  
한국교총 교권국장

휴대전화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가 교칙 위반을 이유로 지도를 하자 어차피 의무교육이니 자를 수 없지 않느냐며 항변하고 대드는 학생, 자기보다 약한 학생을 수시로 괴롭히고 폭행하는 학생... 이들은 교사의 주의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규칙에 따라 안전한 부위인 엉덩이를 두 대 정도 약하게 때린다. 그런데 이튿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왜 내 아이를 체벌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예사이고, 심지어 경찰에 고소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모습이다.

과연 엉덩이 두 대를 때린 교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학생지도권을 벗어난 것일까.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생 폭행 동영상은 그야말로 처벌받아 마땅한 폭력행위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규칙에 정해진 가벼운 벌, 경미한 체벌조차 교사의 정당한 지도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

우선 상위법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체벌로 인식되고 있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고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체벌 금지 방침은 타당성을 잃고 있다. 16개 시·도 중 서울만 전면 금지하는 것도 국가적 수준의 법령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의 성격과 결코 맞지 않다. 학생·학부모·교원들의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둘째,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돼 ‘교육 포기’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체벌 전면 금지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붕괴 현상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무력화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는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일 뿐이다.

셋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체벌 규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던 체벌 금지 조치를 1998년 사립학교까지 확대한 바 있고,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체벌을 불허하고 있다. 일본은 체벌을 금지했지만 교사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텍사스·미주리주 등 23개 주는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여학생에 대한 체벌과 집단체벌은 금지하면서 학교장의 허락 아래 손바

닥이나 옷 위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매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했던 탓이 크다. 체벌을 허용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할 것인가. 금지한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석진 한국교 총 교권국장

## [경인일보] "학생인권조례, 선동적 정책" 김진춘 도의원 쓴소리

데스크승인 2010.09.09 지면보기 김태성 |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김태성기자]경기도교육감 출신이자 교육계 원로인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김진춘 의원(비례)이 지난 7일 도의회 교육위가 원안 가결시킨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진춘 의원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교육위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 권리만을 주장하고, 학교의 수업권은 인정하지 않은 선동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 출신이 작성해서 그런지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대학생들을 위한 조례라고 여겨진다"며 "평등이나 역자란 단어를 활용해 학생들을 선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제도 및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통해 체벌은 엄연히 금지돼 있으며,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도 있다"고 이번 조례안의 불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유를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학생들의 교육받아야 할 권리는 왜 주장하지 않냐"고 반문한 후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들의 수업권과 교육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조례다"며 본회의 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조례를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포럼> 경기議會,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해야

기사 게재 일자 : 2010-09-09 13:58

이성호 / 중앙대 교수·교육학 바른사회 운영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끝내 현실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議會)는 7

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제정 되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할 개연성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생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스러운 표현 보장, 체벌 금지, 학생들의 학교정책 결정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교육에 있어 훈육의 가치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자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각이 전제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훈육은 외적 제재수단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훈육을 교육과 동일시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편협한 시각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훈육이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교와 같이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뤄진 조직의 경우, 조직의 통솔과 효율성을 위해 훈육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적의 구현을 위해 다소의 강제성이 용인되는 집단으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유보될 수 있다. 특히 집단의 공익, 사회성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해 존재하는 규칙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 보충학습, 학생 소지품 검사,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 교내 휴대전화 통제, 체벌 등은 모두 학교라는 집단의 공익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들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 밖에도 학생인권조례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이 같은 조례 제정에 앞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조례로 보호해야 할 만큼 심각하게 인권이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조례 제정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등의 감독과 관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순리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인데, 이를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하급법인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자칫 교육의 주체들을 편가를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인권이 있다면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만일 이들 간의 충돌이나 갈등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 자치권과 참여의 권리 등은 학생이라는 집단을 정치집단화할 소지가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정책 결정에 대해 판단력이 미숙한 단계일 뿐 아니라 관련 정보력 또한 한계가 있는 학생들의 참여권 인정은 자칫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학교는 미성년자들의 교육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그러기에 현재 선진국들은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훈육에 대한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학생들의 특정 행위가 학교의 교육목적에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마저도 인권침해라고 본다면 이는 곧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의 결여를 의미한다.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스스로 폐

## [동아일보] [기고/김진성]포퓰리즘 인권조례, 교실이 무너진다

2010-08-10 03:00 2010-08-10 03:00

학교현장에 교육은 없고 포퓰리즘이 활개 친다.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생인권조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92.3%는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나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첫째, 진보 교육감의 머릿속에는 정치만 있지 교육이란 개념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배경인 자유와 평등 원리와 교육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하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서 평등하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이나 사제 간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논리를 끌어들이면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둘째, 진보 교육감은 학생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만 알지, 그들이 미성년자로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독자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셋째, 교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조례와 균형을 잡겠다는 발상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가해자는 교사이고 피해자는 학생이다. 교권조례의 가해자는 학생이고 피해자는 교사가 된다. 말하자면 사제 간 갈등을 법과 재판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넷째, 아수나로라고 하는 중고교생이 중심이 된 소위 학생인권단체 대표가 광 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하여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등을 반대했다고 한다. 학생의 위치와 본분에서 크게 벗어났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고 교사의 무사안일 풍토가 심화된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때로는 학생에게 엄격한 자기 억제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조선일보]

[사설]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

입력 : 2010.07.01 23:01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오는 7일 발족하는 이 모임은 참여 제안서에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6개 지역에 민주진보 교육감이 탄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망이 밝아졌다"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보수진영이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은 학생이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한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 만든 학생인권조례안(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의 자유, 교육청 교육정책 결정에 학생참여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과연 학생 신분에 적절한 것이냐를 두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게다가 이번 제안서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다. 제안서는 2008년 촛불시위에 나왔던 10대 청소년을 모델로 삼아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로 키우자고 하고 있다.

초·중·고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집단행동을 하기 쉽다. 2년 전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처음 일어났을 때 참가자의 80% 이상이 중·고생이었다. 이들은 병든 소가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PD수첩의 선정적 장면과 분유·치즈·라면을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인터넷 괴소문에 이끌려 "이제 열다섯살인데 벌써 죽기는 싫어요"라며 청계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10대들은 이번 천안함 폭침 때도 미군오폭설·좌초설·내부파괴설 같은 인터넷 유언비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또다른 유언비어를 만들고 퍼뜨렸다.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를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다. 학생들이 외부 세력 조종을 받아 '평준화 확대하라' '등록금 없애라' '특목고 폐지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입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저희 자문위가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보완 지점을 짚어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저희 자문위는 초안에 대한 관심과 논쟁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위원회는 1월에 예정된 세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 경기도 교육위·의회와의 간담회, 서면·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김상곤 교육감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자문위가 마련한 초안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잘못 부풀려진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저희 자문위가 가진 부동(不動)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향후 조례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자 발표하는 것입니다.

### 1. '학생인권조례는 시기상조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입니다. 인권은 응급환자에게만 공급하는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흡입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권 보장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애당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나 늦게 시작해서 더디게 진행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 그동안 학교 현장에는 학생인권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학생도 인간이다'라는 어린 학생들의 외침이 우리 어른들의 심장을 두드린 지도 오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응당 보장했어야 할 권리를 한참이나 뒤늦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만큼, 모든 교육은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인권에 관한 한 학생도 교사도 관리자도 보호자도 모두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성숙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성장할 기회에 초대받고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을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인권 보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준비가 부족한 학교현장이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이 꽃피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준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국제사회는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교육이 인권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교육이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교육 △질 좋은 교육, 그리고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학생의 관심과 소질, 성숙 정도 등에 따라 교육적 자극이 주어져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 없는 교육은 폭력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설계하자는 제안이지, 교육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즐거운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합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교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지 않을 때 어떻게 창조적인 학습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의 삶에 대한 보살핌이 있는 학교, 참여를 통한 변화를 성취하는 경험이 제공되는 학교,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는 학생인권조례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자 교육구성원 모두가 염원하는 학교의 상이기도 합니다.

-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주어질 때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방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인 지시를 거둬낸 자리에는 대화와 소통이 짝뜨게 마련입니다.**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소통의 과정은 교육적으로도 가치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글로벌 창의 인재'는 '글로벌 창의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창의 교육의 초석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자율과 확일에 길들여진 학생들을 자율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 3.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비판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정당한 교권 행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폭력과 강제, 차별에 기댄 교권 행사와는 단호히 결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부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 행사로 교사 전체의 자긍심과 권위가 깃뻛힌 사례들을 여러 차례 목도해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교권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자의성(恣意性)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당한 기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인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개인의 인격에 내맡겨둘 수 없기에, 사회에 법이 필요하듯 학교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지도가 정당한 기준에 충실하게 행사될 때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방식으로 21세기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할 때 엇갈림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욕적인 처벌이나 강요가 학생들의 반감을 사는 것도 당연합니다. **교사의 지도나 교권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사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교사도 즐거운 교육적 만남과 지도 방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교사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인권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히 'No!'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위협에 빠뜨리는 학생이 있다면 마땅히 제지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지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힘이 행사되거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살핌이 자의적으로 철회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부적응이든 공격성 증가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을 살피고 대처방안을

기획하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창조적 역량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 교사들이 학생들 머리나 치마 길이를 재러 다니느라 바쁘고, 학생들에게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아내 야간 자율학습에 남게 하고, 과반수 이상이 오프드려 자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교권 추락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창조적 역량이 정말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정당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는 요청됩니다.

#### 4.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 누군가 불공정거래 규제가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음주운전이나 과속규제가 운전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학교가 준수해야 할 기본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두 법 모두 학교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와 같은 상위 법규를 학교현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 하위규범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옳다면, 이 상위 법규도 부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학생인권조례는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이 있다고 해서 정부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구체화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 학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은 상위 법규와 그 법규에 따른 학생인권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 5. 몇 가지 쟁점 조항에 대하여

- 학생인권조례는 총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빚어진 논란의 대상은 일부 조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한 우려만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전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과 조례 제정을 회구해온 교육주체들의 열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가혹하게 들립니다.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한 우려도 부풀려진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 두발 길이 자유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두발의 전면 자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두발 길이 제한만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2조 1항). 또한 그 밖의 두발 제한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2조 2항). 그동안 두발단속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불만만 끊어올랐던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슬하하게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두발 지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그 규정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엄격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따르느라 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그 바람에 교사의 권위도 서지 못했습니다.

- 두발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두발에 오히려 집중됩니다. 두발 단속을 피하느라 등교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머리를 자르느라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두발 제한이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흐뜨려온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두발을 풀어주면 탈선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불이 났기에 연기가 나는 것인데도 '연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진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2) 복장 자율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교복, 양말, 신발 등 복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이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학생 참여 등 민주적 절차를 밟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12조). 이는 교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상당수 학생들과 보호자들은 교복 착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구성원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교복 착용을 단위 학교별로 충분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당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양말 색깔, 신발 모양, 교복 바깥에 입는 외의의 착용 여부나 색깔까지 정해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추느라 학생과 보호자는 없는 신발이나 외투를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또 여학생의 경우 바지 교복은 입지 못하게 하거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과연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복장규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는 교육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 3) 수업시간 외 학내 집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17조 2항)은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집회장소나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나 신고절차 규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의 하나입니다. 자문위 초안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뿐이며, 다만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면, 학생은 인간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라는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 학생들이 집회를 열게 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지거나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나친 추측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인 정치 이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발언하거나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 학내에서 집회를 연다면 학교를 대상으로 할 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내집회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여는 것이 우려된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게 하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절차가 잘 돌아가면 됩니다.** 자문위 초안이 17조 1항에서 먼저 학생들의 의사 표현권을 보장하고, 뒤이어 2항에서 학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항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2항의 권리를 학생들이 굳이 꺼내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 **학내 집회 자유 보장으로 학생들이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정치를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정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정치적 의미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 하나의 정치적 공간입니다. 더구나 학생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표현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화'라는 딱지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 4) 반성문 강요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에게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16조 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생각을 형성할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생각할 시간과 기회를 갖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교육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학교에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술서가 아니라 교사가 불러주는 대로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학생·보호자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만 생각과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이 조항은 결코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반성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반성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만드는 행위, 학생의 자기 성찰과 교사와의 교육적 소통은 사라진 채 억지로 쓰인 '반성문'만이 교육이 이루어진 증거인 양 남아 행세하는 비교육적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 5)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10조 1항)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교육당국이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남아서 공부할 수 있고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실제로 '동의'한 것도 아닌데 동의한 것처럼 일괄 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비교육적인 일입니다. 이런 기만을 목격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정규교과 외 학습을 강요당할 때 학습 효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6) 체벌 금지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체벌이 금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나 따돌림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체벌과 언어폭력도 포함됩니다.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상해나 자살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교육이라고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 체벌을 교육이라고 우기는 일은 없습니다.

-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적 체벌과 비교육적 체벌을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몽둥이나 손찌검, 발길질을 행하는 일부 교사의 자의(恣意)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교사들도 상담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때 체벌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가장 무서운 효과는 그 폭력이 내재화되고 악순환 되는 데 있습니다. 교사가 솔선수범하여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학생 간 폭력을 예방, 근절하려는 교육적 지도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7) 휴대폰 소지 허용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13조 4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지는 보장하되 수업시간 중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 휴대폰은 이미 대다수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호신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갈등이 불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휴대폰을 압수했을 경우 그 보관 기간과 돌려주는 방식도 해당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8)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에게 학교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20조 1항)하고 있

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여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타인과의 소통 및 조율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참여 보장은 유엔이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바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 자문위 초안은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성숙의 기회를 차단해온 기존 학교 모델’로부터 ‘학생의 참여를 통해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은 그 권한에 걸맞게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학생이 있더라도 권한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정신 아닐까요.

## 6.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념 공세에 대하여

- 마지막으로 저희 자문위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좌파 교육’**이라거나 **‘운동권 주장’**이라거나 특정 단체가 만들어낸 작품이라거나 하는 이념 딱지를 붙이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파나 운동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의 기준으로 합의하여 인류의 양식이 된 ‘인권’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맹비난하는 것은 인권의 반대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자문위는 특정 단체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인권전문가와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복무해온 교장·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내놓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위 전체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부정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 공약이었고, 김 교육감은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30일 자문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가운데 조례 초안을 합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한 것을 두고 재선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이 경기도민의 박수를 받아 교육감이 재선에 이른다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잘한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표를 보낸 주민들의 선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저희 자문위는 부당한 억측이나 이념 공세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이 잘못 흐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이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논쟁을 정상화시키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모델을 고민하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0.1.15.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검토 결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는 지난 2009년 12월 17일 조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자문위원회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 1. 15인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뢰

- 자문위원회는 인권·헌법·교육·복지 전문가들과 교사단체의 교권 정책 담당자 15인에게 초안의 수정·보완 사항을 짚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초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한 검토 의견,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병행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의뢰하여 조례안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 2. 세 차례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는 2010년 1월 19일, 24일, 25일 3일간에 걸쳐 각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일은 경기남부권 종합공청회, 24일은 학생 중심 공청회, 25일은 경기북부권 종합공청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는 학계·교사·보호자·학생 토론자들과 방청인들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 3. 학생참여기획단의 검토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꾸려진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도 이 조례의 직접 당사자로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 4. 온라인, 언론매체를 통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언론매체, 성명 발표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초안을 적극 환영하고 이른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에서부터 몇몇 조항에 대한 우려 입장,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까지를 두루 아울러 검토하였습니다.

### ■ 조례에 대한 우려 의견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뒤 다양한 우려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학습분위기가 저해되거나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우려들의 바탕에는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관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일면 수긍하면서도, 그런 우려야말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이유라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 그동안 학교현장에는 학생인권 관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돼 왔습니다. 그 갈등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관리자, 교사, 보호자, 학생 상호간의 갈등은 물론, 학생지도방식을 둘러싼 교사·학생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가 무엇을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으로서 기능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과 학생생활지도 방식이 자리잡힐 때, 학생들도 학교의 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힐 때, 불필요한 학생통제에 쓰이는 교사들의 역량과 에너지가 학생과 소통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데 쓰일 때, 교사의 정당한 권위도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육의 시작은 신뢰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교사가 학생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만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요소들을 거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통제나 일방적 지시, 타율과 획일성을 거둬낸 자리에 대화와 소통, 자율과 다양성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 기동인 교사-학생 사이의 신뢰를 재건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현실이 불러낸 시대적 응답입니다. 그동안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인권을 잘 보장해 왔다면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온 학교들은 외려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뒷받침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적극 옹호하지만, 그 자율성이 학생의 인권과 교육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을 때에만 옹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가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미성숙하지 않다면 제정될 수 있고 미성숙하다면 제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권은 학생의 미성숙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며, 연령과 성숙이 자동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문위원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또한 학생참여기획단의 활동과 논의 수준을 지켜보면서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입증되지 못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물론 일부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자문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 ■ 초안의 주요 쟁점조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

- 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 전체 48개 조항 가운데 몇몇 조항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고, 그 결과 두 개의 조항은 손질 가능성을 열어두되, 나머지 조항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항들을 향해 제기된 우려점은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손질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1. 차별 금지(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교사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

다. 학생간폭력, 집단따돌림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실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번 고심을 거듭해 보아도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수단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는 이미 교육당국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도 체벌 대신에 상담이나 다른 교육적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체벌에 의존하여 확립되는 교권은 진정한 교권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체벌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학생폭력이 없는 학교,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교도 가능합니다.

## 2.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증가,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는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참여를 강제·반강제하는 일들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학생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하는 반교육적인 일들도 빚어집니다. 자문위원회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학생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참여를 원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때 일시적으로 사교육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원 수강을 이유로 대면 '강제' 야자나 보충수업을 빠질 수 있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자나 보충수업을 강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자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남아 추가 공부를 하는 것이 학원 수강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무작정 강제로 잡아둔다고 사교육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 3. 두발·복장의 자유(12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두발·복장 등을 통해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형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탈선 증가나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은 두발·복장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는 원인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탈선 방지나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학생의 두발·복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근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특히 두발 길이의 자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력한 시대적 요청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도한 두발·복장 제한이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고 학교나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두발·복장 제한을 없애고 학생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생활지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청도 강력했습니다.

- 교복과 관련해서는 애초 원안이 교복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관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보았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교복 착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 이외에 양말 색깔이나 신발 모양, 외투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학생·보호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4.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다만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이나 소지는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 분위기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업분위기 훼손이 우려될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원안이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 현실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허용 여부나 규제·압수 방식 등이 학교나 교사마다 달라 불거지는 혼란이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통신 수단이나 호신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학교 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생·보호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혀 조례 추진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 사상·양심의 자유와 강요된 반성 금지(16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에게도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특히 사상·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허위 반성이 강요되는 일이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적 지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을 적극 경청하면서 세간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반성문이라는 형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반성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 강요'를 금지함을 좀더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조문을 손보았습니다.** 학생이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 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소통은 적극 독려되어야 하되, 거짓 진술과 허위 반성을 강요하는 일은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또한 사상의 자유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나, '사상'이라는 말이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겁고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좀더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문을 손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현실에 좀더 적합한 개념의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 6. 표현의 자유와 학내 집회(17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가운데 일환으로 수업시간 외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위협하다거나 학내 질서 혼란, 학생의 정치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고려하였으나,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모여 기도 모임을 여는 것도 집회이고 학생회 임원들이 등교시

간 교문 앞에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여는 것도 집회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회의 목적, 형태, 규모 등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도 특정 형태의 집회만을 떠올리며 집회의 자유가 학생들에게는 위험한 권리라고 바라보는 것은 억측입니다. 집회의 자유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학교가 이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부풀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내 집회가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잘만 운영한다면 부러 집회까지 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자문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례 제정 전체를 발목 잡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초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학교장의 조건 부과'가 외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에 집회의 자유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기도 한 만큼, 일반 표현의 자유 조항으로 권리 보장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7.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관련

- 자문위원회 초안은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18조),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19조)에 이어 20조에서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는 무리한 권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학생인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 권한에 맞는 성숙한 의견 개진과 책임의식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참여기획단 소속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이 권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학생참여기획단 활동에서도, 세 차례의 공청회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성숙한 의견과 토론 태도를 보여 지켜보는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참여의 기회를 계속 차단당해온 현실에서도 성숙한 의견과 태도를 스스로 길러왔습니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적극 독려 받는다면, 학생들의 성숙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쟁점 따라넘기 2

##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작성에서의 쟁점 검토

조례안작성팀(발표 - 변춘희 || 어린이책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조례안작성팀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토대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준비해 왔음. 조례안작성팀은 1)권리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한다 2)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삭제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주민발의안을 작성하고 있음.

이와 같은 ‘최대주의’적 입장이 타당한지 내부 합의가 필요하며, 아래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으면 함.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시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비고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	교육청의 감독하에 있는 유치원생의 인권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하고자 함

<p>말한다.</p> <p>6.“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p> <p>7.“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p> <p>8.“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p> <p>9. “학생인권옹호관”이라 함은 제40조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p>	<p>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p>	
<p>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p>	<p>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2항은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명시하므로 삭제</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2장 학생의 인권</b></p>	<p><b>제2장 학생의 인권</b></p>	
<p><b>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b></p>	<p><b>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b></p>	
<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p>	<p>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p>	<p>경제적 지위를 추가함.</p>

<p>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학교는 건축물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바꿈.</p>
<p><b>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b></p>	<p><b>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b></p>	
<p>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 체벌도 폭력의 한가지 이므로 1항에 포함. -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 따로 항을 분리했으나 서울은 이미 체벌금지를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의 3항은 학교폭력과 체벌을 분리함으로써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학생간의 폭력으로 오해되어 이해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폭력뿐 아니라 교직원이나 학교가 학생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포함함.</p>
<p>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p>	<p>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p>	<p>-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완곡하여 수정함.</p>
<p><b>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b></p>	<p><b>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b></p>	
<p>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p>	<p>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 <p>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p>	<p>-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은 권리를 설명하는데 조건을 다는 형식의 설명방법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함. - 장애 학생의 표현 수정함.</p>

<p>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어색한 문맥 수정함.</p>
<p>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p>	<p>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p>	<p>- 4항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확보내용 추가함.</p>
<p><b>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b></p>	<p><b>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b></p>	
<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p>	<p>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p>	<p>- 두발의 길이만 제한할 수 없도록 한 2항은 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삭제함.</p> <p><u>* 두발 길이만이라도 규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따로 강조해야한다는 의견과 토론이 필요함</u></p>
<p>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p>	<p>-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13조는 교육목적상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하므로 수</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li> <li>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일괄 검사를 하는 행위</li> <li>2.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li> <li>3. 학생의 휴대전화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li> <li>4.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li> <li>5.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li> <li>6.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li> </ol> <p>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p> <p>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p> <p>⑥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p> <p>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p> <p>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p>	<p>정함.</p> <p>- 학생의 교우관계를 간섭하는 것도 인권 침해로 보고 추가하였음.</p>
	<p>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li> <li>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li> <li>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li> </ol>	

	<p>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p> <p>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5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p>- 정보 공개를 요구 받았을 때 학교의 장이 공개할 의무 조항 추가.</p>
<p><b>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b></p>	<p><b>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b></p>	
<p>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p> <p>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p>	<p>[A안]</p> <p>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안]</p> <p>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p>	<p>-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A안 '사상'의 자유라는 말이 논란이 되었음. 논란이 된 사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여 의미를 포함시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B안을 선택하였음.</p> <p>-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추가함.</p> <p>- 종교과목을 수업할 경우 대체과목을 의무화</p>

<p>행위</p> <p>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p> <p>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을 편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p> <p>5.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p> <p>6.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p> <p>④ 학교는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p> <p>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p>	<p>자유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p>	<p>함. 대체과목이라 표현할 지 복수과목이라 표현 할지 검토가 필요함.</p>
<p>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④ 학생은 학교 밖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A안]</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육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④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p>⑤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B안]</p> <p>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권리 표현 방법을 구체화했음.</p> <p>* <u>집회나 시위 정치활동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당연한 권리</u> <u>이므로 조례팀에서는 조례안에 넣기로 합의함.</u></p>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b>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b>	<b>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b>	
<p>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p> <p>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li> <li>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li> <li>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li> </ol> <p>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li> <li>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li> <li>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li> <li>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li> <li>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li> <li>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li> <li>7.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li> </ol>	<p>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p> <p>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학생자치조직의 대표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추가함.</p> <p>- 학생자치조직의 권리와 학생회의 권리 항을 추가함.</p>
<p>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개정안 발의권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을 부연함.</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p>	<p>-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 의견을 거처도록 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학생 대표나 소수 학생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를 대비함,</p>
<p>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p> <p>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p> <p>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2항 4항 5항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b></p>	
<p>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p>	<p>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p>	

<p>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23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p> <p>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p> <p>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p>	

	력하여야 한다.	
<b>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b>	<b>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b>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항을 내용을 구분하여 3항과 4항으로 분리.
<b>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b>	<b>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b>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p>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b></p>	<p><b>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b></p>	
<p>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하 “소수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외국인 학생 추가함. - 소수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의견은 추가하여 구체 항목으로 반영하고자 함.</p>
<p>3장 이하는 아직 검토중</p>		